

2019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예산안분석시리즈 II

# 2019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 교육위원회 】

2018. 10.

---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 (2018. 10. 22.)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

# 발간사

정부는 지난 9월 3일 총수입 481.3조원, 총지출 470.5조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 소득분배 개선 등 현안 문제에 대응하고자 전년도 본예산보다 총지출을 41.7조원(9.7%) 확대 편성하였으며, 이러한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당면한 사회적·경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점검하는 동시에 재정건전성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는 「총괄 분석」, 「위원회별 분석」,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성인지 예산서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 분석」에서는 국가채무·재정수지·의무지출 등을 중심으로 재정총량에 대한 현황과 분석내용을 수록하였고, 혁신성장 및 일자리 대책 등 주요 정책사업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개별사업 단위로 각 부처의 주요 증액 또는 현안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는 한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에서는 보조금, 출연금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예산안을 각각의 기관별로 살펴보았으며, 「성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성인지 대상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국회 심사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예산안 심사 과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 김 춘 순



# 차 례

# CONTENTS

## 교육위원회

### [교육부]

#### I. 예산안 개요 / 1

- 1. 현 황 ..... 1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 5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 6

#### II. 주요 현안 분석 / 9

- 1. 교육부 소관 대학 재정지원 사업 예산안 분석 ..... 9
  - 1-1.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의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 12
  - 1-2.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성과제고 방안 마련 필요 ..... 16
  - 1-3. 산학협력 지원 사업의 성과평가와 연계한 예산 편성 필요 ..... 22
-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과적 활용방안 마련 필요 ..... 27



# CONTENTS

## III. 개별 사업 분석 / 35

1. 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금의 사업취지를 고려한 집행 필요 .....	35
2.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의 집행관리 강화 등 .....	40
3. 교육급여의 사업관리 강화 필요 .....	44
4. 파란사다리의 저소득층 지원 성과 제고 필요 .....	49
5. 교육정책 홍보의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	53
6. 서울대학교 출연금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 마련 등 .....	57
7.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성인 진로교육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 미흡 등 .....	64
8. 무한상상실의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	69
9. 국가교육회의 운영지원의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	73
10.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비 보육료 집행잔액 반납 지연에 따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수입 미반영 .....	76
11. 대학창의적자산실용화(BRIDGE+) 지원 사업의 기술이전 성과 재투자 유도 필요 ..	79
12.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총간 편찬사업의 총 사업 규모 파악 등 사업계획 구체화 필요 .....	83



목차



# I 예산안 개요

## 1 현 황

### 가. 총수입·총지출

교육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은 일반회계, 2개 특별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및 2개 기금(사학진흥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으로 구성된다.

교육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의 총수입은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2개 기금(사학진흥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으로 구성되며, 총지출은 일반회계, 2개 특별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및 2개 기금(사학진흥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으로 구성된다.

교육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5조 9,003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518억원(0.9%)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1,491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14억원, 사학진흥기금 2,008억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5조 5,391억원이다.

[2019년도 예산안 교육부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결산	2018 <sup>1)</sup>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146,011	163,061	163,061	160,471	△2,590	△1.6
- 일반회계	134,809	154,295	154,295	149,097	△5,198	△3.4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1,202	8,766	8,766	11,374	2,608	29.8
기 금	5,027,977	5,685,450	5,685,450	5,739,869	54,419	1.0
- 사학진흥기금	188,475	197,196	197,196	200,808	3,612	1.8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4,839,502	5,488,254	5,488,254	5,539,061	50,807	0.9
합 계	5,173,988	5,484,511	5,484,511	5,900,340	51,829	0.9

주: 1) 기금은 각각 2018년 당초계획안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안을 의미

자료: 교육부

교육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75조 2,052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6조 8,106억원(10.0%)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66조 1,031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6,839억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조 7,440억원, 사학진흥기금 2,245억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4조 4,496억원이다.

[2019년도 예산안 교육부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결산	2018 <sup>1)</sup>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58,845,066	63,840,259	64,002,573	70,531,055	6,528,482	10.2
- 일반회계	54,024,789	59,163,980	59,318,294	66,103,116	6,784,822	11.4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879,396	783,562	791,562	683,902	△107,660	△13.6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940,881	3,892,717	3,892,717	3,744,037	△148,680	△3.8
기 금	4,405,682	4,391,978	4,391,978	4,674,107	282,129	6.4
- 사학진흥기금	188,300	221,440	221,440	224,485	3,045	1.4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4,217,382	4,170,538	4,170,538	4,449,622	279,084	6.7
합 계	63,250,748	68,232,237	48,394,551	75,205,162	6,810,611	10.0

주: 1) 기금은 각각 2018년 당초계획안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안을 의미  
자료: 교육부

## 나. 세입·세출예산안

교육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2개 특별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구성된다.

교육부 소관 2019년도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2개 특별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2개 특별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구성된다.

교육부 소관 2019년도 세입예산안은 3조 9,565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392억원(3.4%) 감소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011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14억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조 7,440억원이다.

[2019년도 교육부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87,076	194,202	194,202	201,106	6,904	3.6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1,202	8,766	8,766	11,374	2,608	29.8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940,881	3,892,717	3,892,717	3,744,037	△148,680	△3.8
합 계	4,139,159	4,095,685	4,095,685	3,956,517	△139,168	△3.4

주: 총계 기준

자료: 교육부

교육부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75조 1,715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6조 4,599억원(9.4%)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0조 7,435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6,839억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조 7,440억원이다.

[2019년도 교육부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58,790,856	63,872,934	64,027,248	70,743,520	6,716,272	10.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879,396	783,562	791,562	683,902	△107,660	△13.6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940,881	3,892,717	3,892,717	3,744,037	△148,680	△3.8
합 계	63,611,133	68,549,213	68,711,527	75,171,459	6,459,932	9.4

주: 총계 기준

자료: 교육부

**다. 기금운용계획안**

교육부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사학진흥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으로 구성된다.

교육부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2조 6,332억원으로 전년 수정계획안 대비 3,990억원(3.3%) 증가하였다. 기금별로는 사학진흥기금 5,227억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2조 1,104억원이다.

[2019년도 교육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결산	2018		2019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사학진흥기금	412,318	556,690	556,690	522,738	△33,952	△6.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1,273,960	11,677,470	11,677,470	12,110,432	432,962	3.7
합 계	11,686,278	12,234,160	12,234,160	12,633,170	399,010	3.3

주: 1. 총계 기준  
 2. 2018년 수정계획안은 9월말 기준  
 자료: 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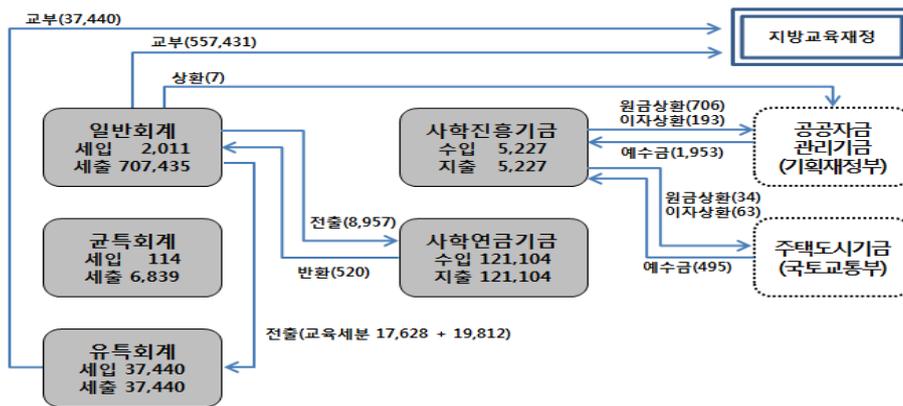
라. 재정구조

2019년도 교육부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의 경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3조 7,440억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으로 8,957억원이 전출되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차관 원금·이자 7억원을 상환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경우 일반회계로 520억원이 반환된다. 사학진흥기금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금 1,953억원을 받고, 예수 원금 706억원, 예수 이자 193억원을 상환하며,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예수금 495억원을 받고 예수 원금 34억원, 예수 이자 63억원을 상환한다.

(단위: 억원)



주: 총계기준  
 자료: 교육부

2019년도 교육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확대 등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되었고(2018년 53.7조원 → 2019년 59.8조원), ②대학혁신지원(R&D) 사업, 국립대학 육성사업 등을 중심으로 고등교육 예산이 확대되었으며(2018년 9조 5,617원 → 2019년 9조 9,537억원), ③선취업 후학습 지원, K-MOOC 강좌 확대 등으로 평생·직업교육 부문 예산이 확대되었다(2018년 6,707억원 → 2019년 7,420억원).

2019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경우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의 목적인 ‘대학 자율성과 경쟁력 제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의 교육 역량 제고를 위해 국립대학 육성사업과 대학혁신지원 사업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둘째, 최근 3년간 증가추세에 이어, 2019년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비용 보전을 위해 교육사업에 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투자 여력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교육부는 지방교육채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II유형의 경우 신청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과 등록금 수준이 낮은 사이버 대학 재학생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 일자리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다는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청년 참여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육부는 서울대학교 출연금 총액 편성 시 자체재원 규모, 법률에 명시된 출연금 산정기준 등의 근거를 활용하여 출연금 규모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3

##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교육부의 2019년도 신규사업은 일반회계 총 8개 사업, 5,816억원 규모이다.

대학혁신지원(R&D) 사업은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위해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와 연계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체교섭 및 건전노사관계 구축 사업은 새 교원노조가 설립(2017.12. 교사노동조합연맹)됨에 따라 협력적 노사관계 모색 및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사무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에너지 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은 학교 미세먼지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법 제도 개선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지원 체계 구축은 학교 현장의 성폭력 예방·대응 및 심리상담 등 실질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중앙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어능력시험 개선은 현행 한국어능력시험에 한국어능력시험 말하기 평가의 도입을 위해 ISP 수립과 말하기 평가 문항 개발·모의 시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8개)	대학혁신지원(R&D)	568,755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개발 및 활용 활성화	11,406
	단체교섭 및 건전노사관계 구축	170
	에너지 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	636
	대학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지원 체계 구축	300
	한국어능력시험 개선	208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기본경비(총액대상)	21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기본경비(총액비대상)	94
합 계		581,590

주: 세부사업은 해당연도에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업, 다른 사업과 통합된 사업, 내역사업이 분리되어 세부사업으로 편성된 사업 등을 포함

자료: 교육부

2019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보통교부금, 전문대학혁신지원(R&D), 국립대학 육성사업,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 등이 있다.

① 보통교부금은 내국세 등에 연동되어 결정되며 2019년 내국세 세입예산안 증가(전년대비 13.7%)에 따라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고, ②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은 지원대학수 증가 및 지원단가 인상으로 예산이 증액되었다. ③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지원단가 인상(거점국립대 교당 53억원 → 99억원)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④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 사업도 지원단가 인상(33억원 → 42억원)으로 예산이 증액되었다.

[교육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18 <sup>1)</sup>		2019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22개)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 지원	34,055	34,055	46,451	12,396	36.4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524	524	742	218	41.6
	보통교부금	47,695,613	47,695,613	54,168,686	6,473,073	13.6
	대학구조개혁지원	8,977	8,977	12,149	3,172	35.3
	국립대학 육성사업	80,000	80,000	150,400	70,400	88.0
	인문사회기초연구	147,021	147,021	161,744	14,723	10.0
	연구윤리 활동지원	705	705	1,005	300	42.6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103,980	103,980	220,669	116,689	112.2
	한국장학재단 출연	197,629	197,629	239,194	41,565	21.0
	국립대학 인건비	1,561,843	1,561,843	1,620,920	59,077	3.8
	국립대학 시설확충	523,031	523,031	583,955	60,924	11.6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437,148	437,148	456,820	19,672	4.5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운영	1,314	1,314	2,932	1,618	123.1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2,391	2,391	3,128	737	30.8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12,730	17,530	24,130	6,600	37.6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18 <sup>1)</sup>		2019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1,040	1,040	1,577	537	51.6
	학생지원국 기본경비 (총액대상)	43	43	57	14	32.6
	학생지원국 기본경비 (총액비대상)	229	229	300	71	31.0
	학술원 기본경비(총액대상)	99	99	273	174	175.8
	국사편찬위원회 기본경비 (총액대상)	208	208	819	611	293.8
	교육정책 이해도 제고	1,419	1,419	2,041	622	43.8
	소속기관 청사유지 관리	6,057	6,057	8,846	2,789	46.0
국가균형 발전특별 회계 (3개)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	221,168	229,168	292,515	63,347	27.6
	전문대학 혁신지원(R&D)	250,764	250,764	290,786	40,022	16.0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지원	78,680	78,680	93,787	15,107	19.2
사학 진흥기금 (1개)	정보시스템 운영	946	946	2,187	1,241	131.2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 (2개)	연금급여	2,538,523	2,538,523	2,766,929	228,406	9.0
	퇴직수당급여	460,016	460,016	560,342	100,326	21.8

주: 1) 기금은 각각 2018년 당초계획안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안을 의미

1. 주요 증액사업은 2018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교육부

## II

## 주요 현안 분석

### 1

### 교육부 소관 대학 재정지원 사업 예산안 분석

교육부 소관 대학 재정지원 사업은 국립대학(국립대법인 포함)만 지원하는 사업, 대학 설립 유형에 관계없이 신청·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국립대학에 대해서는 낮은 등록금을 유지하면서 인건비, 운영비, 시설확충비 등을 보전해 주고 있으며, 다른 공모 방식 재정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사립대학의 경우 별도로 사립대학만 지원하는 사업은 없으며 공모 방식 재정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2019년 국립대만 지원하는 사업(국립대법인만 지원 사업 2개, 5,448억원 포함)의 예산안은 14개 사업에 3조 2,839억원이 편성되었다. 그리고 공모 방식을 통해 국립(국립대법인 포함)과 사립대학 모두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안은 14개 사업에 1조 6,693억원이 편성되었다.

[교육부 소관 대학 및 재정지원 현황]

설립 유형별	개소수	평균 등록금	지원 내용	2019년 예산안
국립대 (국립대법인포함)	41개 (국립대법인 2개)	414만원	인건비, 운영비, 시설확충비 등	14개 사업 3조 2,839억원 (국립대법인 2개 사업, 5,448억원 포함)
			공모 방식 재정지원사업	14개 사업
사립대	290개	740만원	공모 방식 재정지원사업	1조 6,693억원

주: 평균 등록금은 4년제 대학(대학정보공시, 2017년 결산기준) 기준

자료: 교육부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788-4634)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 강화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2019년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구조를 단순화하였다. 교육부는 대학 재정지원사업 중 8개 세부사업을 재구조화의 대상사업으로 포함하였는데, 국립대만 지원하는 사업(국립대학 육성사업 1개)과 공모방식 재정지원 사업(7개)이 이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재구조화의 이유를 대학 재정지원사업이 사업별 지원 목적에 따라 다양한 사업으로 구분되고 목표부터 성과관리까지 정부중심으로 추진되어 대학 자율성 제고를 저해하고 다수의 재정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대학 전체의 발전전략 추진보다 개별 사업에 맞춘 분절화된 추진으로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대학 재정지원사업 재구조화 현황]

(단위: 백만원)

2018			2019			
세부사업명	본예산	추경	유형	목적	세부사업명	예산안
국립대학혁신사업	80,000	80,000	국립 대학 지원	국립 대학 육성 지원	국립대학 육성사업	150,400
사회수요맞춤형 인재양성사업(R&D)	234,918	234,918	일반 재정 지원	대학 혁신 지원	대학혁신지원 (R&D)	568,755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 (ACE)(R&D)	73,959	73,959				
지방대학육성사업(R&D) - 지방대학특성화사업(CK)	135,798 <sup>1)</sup>	135,798 <sup>1)</sup>				
소계	444,675	444,675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250,764	250,764			전문대학 혁신지원	290,786
산학협력고도화지원	221,168	229,168	특수 목적 지원	산학 협력	산학협력 고도화지원	292,515 <sup>2)</sup>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지원	78,680	78,680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지원	93,797
BK21플러스사업	297,707	297,707			연구	BK21 플러스사업
합계	1,372,994	1,380,994	합계			1,692,985

주: 1) 지방대학육성사업의 내역사업은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CK)'과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이며,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에 따라 지방대학특성화사업(CK)은 대학혁신지원(R&D) 사업으로,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은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 사업으로 통폐합

2) 지역선도대학육성 사업 2019년 예산(100억원) 포함

자료: 교육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부 소관 주요 재정지원사업을 2019년 3개 유형(국립대학, 일반재정지원, 특수목적지원) 및 4개 목적(국립대학육성, 대학혁신지원, 산학협력, 연구)으로 개편하였다.<sup>3)</sup> 세부사업 기준으로는 8개 세부사업을 6개 세부사업으로 조정하였는데, 동 사업의 2019년 예산안은 전년대비(추경예산 기준) 22.6% 증가한 1조 6,930억원이다.

국립대학지원 유형은 기존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sup>4)</sup>을 국립대학 육성 사업으로 확대한 것으로 국립대학의 공적역할(고등교육 기회 제공, 기초학문 보호·육성, 지역사회 기여, 네트워크 구축 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재정지원 유형은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4개 세부사업<sup>5)</sup>을 대학혁신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2개 세부사업으로 통합한 것으로, 재정 확충을 통한 대학의 기본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4년제 대학 지원 사업인 사회수요맞춤형인재양성사업(R&D)·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ACE)(R&D)·지방대학육성사업(R&D)을 대학혁신지원(R&D) 사업으로 통합하였으며, 전문대학 지원 사업인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을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으로 개편하였다. 일반재정지원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sup>6)</sup>와 연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자율개선대학과 일부 역량강화대학)에 대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처를 지정하지 않고 지원한다.

특수목적지원 유형은 대학의 핵심 기능인 산학협력과 연구 목적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세부사업 기준으로 보면, 기존 3개 세부사업(산학협력 고도화지원,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지원, BK21플러스사업)을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3) 2018년 3월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 확정 발표

4)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은 2017년까지 일부 국립대학을 지원하는 공모방식 사업이었으며, 2018년부터 39개 전체 국립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편되어 확대되고 있다.

5) 교육부는 4개 세부사업을 ACE+(자율역량강화), CK(특성화), PRIME(산업연계), CORE(인문), WE-UP(여성공학)의 5개 내용으로 구분한다.

6)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진단 대상 대학 323교를 평가하여, 이 중 64%(207교)를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대학들을 다시 평가하여 80점 이상 대학을 역량강화대학(66교)으로, 80점 미만 대학을 재정지원제한대학(20교)으로 구분하였다. 대학혁신지원은 이 중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화대학 중 일부에 대해 재정을 지원하며, 자율개선지원대학은 대학별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자율혁신 추진을 위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으며, 역량강화대학은 정원감축과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일부 대학만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 1-1.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sup>7)</sup>의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 가. 현황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위해 사용처를 지정하지 않고 지원하는 일반재정지원 유형으로 세부사업인 대학혁신지원(R&D) 사업, 전문대학 혁신지원(R&D) 사업을 포함한다. 대학혁신지원(R&D)<sup>8)</sup> 사업은 일반대학을 지원하던 기존의 3개 세부사업을 통합한 것으로 2019년 예산안은 전년보다 1,241억원(27.9%) 증액한 5,688억원이다. 전문대학 혁신지원<sup>9)</sup> 사업은 전문대학을 지원하는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을 개편한 것으로, 2019년 예산안은 전년보다 400억원(16.0%) 증가한 2,908억원이다.

[2019년도 대학혁신지원(R&D)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R&D)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대학혁신지원(R&D)	517,094	444,675	444,675	568,755	124,080	27.9
전문대학 혁신지원(R&D)	267,515	250,764	250,764	290,786	40,022	16.0

자료: 교육부

대학혁신지원(R&D) 사업과 전문대학 혁신지원(R&D) 사업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자율개선대학, 일부 역량강화대학)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대학혁신지원(R&D) 사업은 132개 내외를 대상으로 교당 평균 19억원 또는 45억원을 지원하고,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은 95개교를 대상으로 교당 평균 13억원 또는 30억원을 지원한다. 2019년 예산안 증액은 지원대학수(대학혁신지원(R&D) 사업 119→132개 내외,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83→95개)가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이며, 대학혁신지원(R&D) 사업의 지원단가가 인상(자율개선 대학 37→45억원)된 것도 증액 요인이다.

7) 대학혁신지원(R&D) 사업과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8) 코드: 일반회계 2238-312

9) 코드: 균형발전특별회계 4602-300

[대학혁신지원 사업의 개편 전후 주요 사업 내용]

		2018	2019(안)
대학 혁신 지원 (R& D)	사업명	사회수요맞춤형인재양성사업 (2016~2018년, 3년), 학부교육 선도대학육성(ACE)(2010~계속), 지방대학육성사업(지방대학 특성화 사업)(2014~2018년, 5년)	대학혁신지원(2019~2021)
	예산(안)	4,447억원	5,688억원
	지원대학	119개	132개 내외(자율개선대학 120개, 역량강화대학 12개 내외)
	평균지원액	37억원	자율개선대학 45억원 역량강화대학 19억원
전문 대 학 혁 신 지 원	사업명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전문대학 혁신지원
	예산(안)	2,508억원	2,908억원
	지원대학	83개	95개(자율개선대학 87개, 역량강화대학 8개)
	평균지원액	30억원	자율개선대학 30억원 역량강화대학 13억원
공 통 사 항	배분방식	각 사업계획을 평가 후 지원액 결정	포물러 방식 <sup>10)</sup> (기준경비, 규모지수, 교육여건 등을 고려)
	집행방식	특정목적에 위해 사용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자율 집행
	성과관리	교육부가 성과지표 설정 및 평가	대학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자율 성과지표 설정 및 교육부 사후평가

자료: 교육부

사업기간은 2019~2021(3년)이며, 대학별 재원배분(안)은 기준경비, 규모지수,

10)

$$\begin{array}{|c|} \hline \text{기준 경비} \\ \hline \text{학생 1인당} \\ \hline \text{교육비 평균액} \\ \hline \end{array}
 \times
 \begin{array}{|c|} \hline \text{규모 지수} \\ \hline \sqrt{\text{재학생수}} \\ \hline \end{array}
 \times
 \begin{array}{|c|} \hline \text{교육여건} \\ \hline \text{교육비환원율, 전임교원} \\ \hline \text{확보율, 학생충원율} \\ \hline \end{array}
 \times
 \begin{array}{|c|} \hline \text{조정} \\ \hline \text{상수} \\ \hline \end{array}
 =
 \begin{array}{|c|} \hline \text{대학별} \\ \hline \text{재정지원액} \\ \hline \end{array}$$

교육여건 등을 고려한 일정한 공식에 따라 지원하는 포괄적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대학은 자체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자율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교육부와 대학혁신협약을 맺고, 이에 따라 자율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집행하며, 교육부는 이에 대해 사후평가를 실시한다.

## 나. 분석의견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의 목적인 ‘대학 자율성과 경쟁력 제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 보다 지원대학수가 증가(202→227개 내외)하고 지원단가도 일부 인상되어 등록금 수입 감소에 직면해 있는 대학의 재정 확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 사업은 대학이 자체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사업으로, 특정목적을 위해 지원되었던 기존 사업과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지원하고 사후평가만 실시한다는 큰 틀의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지만, 중장기 발전계획이 담아야 하는 내용, 성과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내실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교육부는 중장기 발전계획 작성 내용에 대해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작성하되 중요 요소를 포함하도록 하며, 중요 요소로 대학의 비전 및 목표, 대학 혁신 전략, 종합 재정 투자 계획, 성과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중장기 발전계획 작성 내용(안)]

#### I. 대학의 비전 및 목표

- 대내외 여건 분석 및 대학 현황 분석, 대학의 건학이념 및 인재상
- 대학의 혁신비전 및 중장기 발전 목표

#### II. 대학 혁신 전략

- 대학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대학 혁신 방안**
  - ※ 연구, 산학협력, 학부교육 등 중점분야 선정, 재구조화, 교육·연구 시스템의 혁신 등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 기존 재정지원사업(ACE+, CK, PRIME, CORE, WE-UP 등)의 성과 유지·확산이 대학의 발전계획에 부합하도록, 이를 포함하여 작성

### III. 종합 재정 투자 계획

- 교육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부처, 지자체, 교내 예산 등 예산 확보 현황 및 계획을 각 영역별로 기술
-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 예산투입 계획 서술

### IV. 성과관리 방안

- 성과 관리 체계 구축 방안, 연차별 성과 관리 방안

자료: 교육부, 대학 자율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안), 2018. 3.

대학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교육부를 이를 기반으로 사후 성과평가를 실시하므로, 대학의 자율적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조화롭게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평가내용을 중요 요소로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성과관리 방안의 경우 대학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스스로 정량 또는 정성의 자율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대학과 교육부는 「대학혁신협약」을 맺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책무성을 확보하며, 교육부는 각 사업 년도 종료 후 「대학혁신협약」이행을 중심으로 연차 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대학이 자율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성과지표를 설정하므로 성과관리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장기 발전계획의 타당성, 성과지표의 객관성 및 적절성, 대학간 형평성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교육부는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역량강화대학 중 일부에 대해서만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즉, 66개교를 역량강화대학으로 구분하였으며, 정원 감축 계획 및 발전계획 등과 연계한 계획을 공모·심사하여 이 중 20개교 내외를 선정하여 재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므로 교육부는 지원대학 선정 기준 및 지원방식 등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을 경우 대학의 자율성 개선 유도라는 사업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고 중장기 발전계획의 타당성, 성과지표의 객관성 및 적절성 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대학 자율성과 경쟁력 제고라는 동 사업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1-2.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성과제고 방안 마련 필요

### 가. 현황

국립대학 육성사업<sup>11)</sup>은 국립대학이 국립대 고유의 공적 역할<sup>12)</sup>을 수행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수립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공동 교육과정 운영, 우수 교원 교류, 자원·시설 공유 등 국립대학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연구재단 출연사업 방식으로 운영<sup>13)</sup>된다. 이 사업의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704억원(88.0%) 증액한 1,504억원이다.

[2019년도 국립대학 육성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립대학 육성사업	20,540	80,000	80,000	150,400	70,400	88.0
- 국립대학 육성사업	20,060	79,100	79,100	149,100	70,000	88.5
- 사업관리비	480	900	900	1,300	400	44.4

자료: 교육부

2019년 예산안 증액의 요인은 지원단가 인상으로, 거점국립대<sup>14)15)</sup> 9개교에 대해서는 교당 53억원에서 99억원으로 인상하고, 지역중심 국립대 등 나머지 30개교

11) 코드: 일반회계 2258-300

12) 고등교육 기회균등, 기초보호학문 육성, 지역사회 기여, 네트워크 구축 등

13) 한국연구재단이 대학별 예산 배분, 성과평가 등을 수행한다.

14) '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에 가입한 전국 9개 국립대학(서울대학교 제외)

15) [교육부 소관 국립대학 현황]

거점국립대 9개	지역중심국립대 등 19개	교원대학 11개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창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밭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에 대해서는 교당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2019년도 국립대학 육성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구분	2018 예산	2019 예산안
국립대학 육성사업	80,000백만원	150,400백만원
사업비	79,100백만원 (거점국립대 육성) 9개교 × 5,273백만원 = 47,460백만원 (지역중심 국립대 등 육성) 30개교 × 1,054백만원 = 31,640백만원	149,100백만원 (거점국립대 육성) 9개교 × 9,940백만원 = 89,460백만원 (지역중심 국립대 등 육성) 30개교 × 1,988백만원 = 59,640백만원
사업관리비	900(1식×900백만원)	1,300(1식×1,300백만원)

자료: 교육부

## 나. 분석의견

국립대학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학의 교육 역량 제고를 위해 국립대학 육성사업과 대학혁신지원 사업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국립대학의 교육 역량강화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기회 제공, 국가 전략 분야 연구, 지역발전 선도 등 공공성에 기반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88.0% 증가하였다.

또한 2019년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이 개편·확대되었으며, 동 사업은 국립·사립 대학의 기본역량 강화를 위해 재정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2019년 국립대 중 자율개선대학 22개와 일부 역량강화대학 등은 국립대학 육성사업과 (전문)대학혁신 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을 지원받는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국립대로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해 공통지표를 설정·운영하고 있으며 예산 배분에서도 사업계획 평가와 대학·지역간 네

크워크 활성화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대학혁신지원 사업과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국립대학 육성사업과 대학혁신지원 사업은 배분방식이 기준경비 등에 기반한 포물러 방식이고, 성과관리도 대학의 자율 성과지표에 기반한 사후 평가라는 점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 비교]

구분	국립대학 육성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 목적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지역인재 육성	기본역량 강화
2019년 예산안	150,400백만원	대학혁신지원: 568,755백만원 전문대학 혁신지원: 290,786백만원
지원 대학	국립대 39교 (4년제 38교, 전문대 1교)	국립대 및 사립대 (4년제 132교 내외, 전문대 95교) ※ 국립대: 자율개선대학 22교 (전문대 1교 포함), 역량강화대학 4교 중 일부
평균 지원단가	거점대 99억원, 기타 20억원	- 4년제: 자율개선대학 45억원, 역량강화대학 19억원 - 전문대학: 자율개선대학 30억원, 역량강화대학 13억원
배분 방식	- 규모 등에 따른 포물러 방식(70%) : 대학별 지원액 = 기준경비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대학별 등록금)×규모지수(√재학생수+√전체교원수)×조정상수 - 사업계획 평가 20% - 네트워크 활성화 10%	- 규모 등에 따른 포물러 방식 : 대학별 지원액 = 기준경비(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액) × 규모지수(√재학생수) × 교육여건(교육비 환원율, 전임교원확보율, 학생충원율) × 조정상수
성과 관리	- 국립대학이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따른 자율혁신 지원 및 사후 평가 - 성과지표 (공통지표) 국립대의 공적 책무와 관련된 교육 및 연구성과, 고등교육 기회균등, 지역발전 기여 등 (자율 성과지표) 대학 자율 선정	- 대학의「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자율혁신을 지원, 사후 평가 - 성과지표 (자율 성과지표) 대학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성 또는 정량의 자율 성과지표 선정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전체 대학의 기본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 사업과 별도의 국립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립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력과 연구력 제고를 위한 기본역량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고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서울 지역에는 국립대법인 서울대와 주요 사립대가 위치하는 것을 고려하면 거점국립대가 광역시 또는 도지역의 거점대학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질 높은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17년 기준 학생 1인당 교육비<sup>16)</sup> 수준으로 대학의 교육 역량을 살펴보면, 거점국립대<sup>17)</sup>의 경우 1,627만원 수준으로 서울지역 주요 사립대 2,139만원, 국립대법인 4,443만원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

다만 2018년 기준 사립대학이 전체 대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6.5%로 고등교육 기능의 상당부분을 사립대학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립대와 국립대간, 지역별 사립대 간 교육 역량의 격차 측면에서도 대학지원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립대의 1인당 교육비는 1,408만원으로 거점국립대와 국립대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및 수도권 이외 지역 사립대일수록 1인당 교육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sup>18)</sup>

16) 총 교육비는 국공립의 경우(대학회계+발전기금회계+산학협력단회계) 중 교육투자 금액, 사립의 경우(교비회계+산학협력단회계) 중 교육투자 금액이다. 여기서 교육투자 금액은 인건비, 물건비, 연구지도경비, 장학비, 경상비, 산학협력비, 도서구입비, 기계기구매입비(교육용) 등 학생의 교육비로 재투자 되는 비용이다.

17) 서울대 등 국립대법인 제외

18) 2017년 전체사립대(170교) 1,408만원, 수도권 소재 사립대(73교) 1,522만원, 서울소재 사립대(44교) 1,565만원

[대학유형별 학생 1인당 교육비 현황]

(단위: 개, 만원)

구분	국립대	거점국립대	국립대법인	사립대	서울지역 주요사립대
학교수	37  37개교 (교육부소속 국립대 중 방통대와 한국복지대 제외)	9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6  국립대법인2교 (서울대,인천대), 특별법인4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 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170  전체사립대 ※전문대학 제외한대학 (대학교, 산업대학, 사이버대학, 각종학교, 기술대학)	9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학생 1인당 교육비	1,479	1,627	4,443	1,408	2,139
평균 등록금	414			740	

주: 1. 2017년 기준

2. 국립대와 거점국립대의 경우 서울대 등 국립대법인 제외

3. 2017년 국립대법인 학생 1인당 교육비: 서울대 4,335만원, 인천대 1,534만원, 광주과학기술원 8,686만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9,904만원, 울산과학기술원 5,086만원, 한국과학기술원 6,669만원

4. 등록금은 2017년 4년제 대학 기준

자료: 교육부

이러한 대학별 교육비 격차는 대학회계 수입(국가 재정지원 또는 등록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사립대와 국립대간 평균 등록금의 차이가 크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대학간 또는 지역간 고등교육 역량의 편차를 고려하여 국립대학 육성사업과 대학혁신지원 사업이 대학의 교육 역량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규모 산정, 성과관리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와 연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2019년 39개 국립대학을 공모 및 심사 없이 지원하는 방식이며, 교육부는 이에 대해 국립대학을 지역거점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 국립대학 중 4개 대학<sup>19)</sup>이 정원감축과 구조조정이 필요한 역량강화대학으로 판정받았으며, 역량강화대학은 대학의 자율적인 개선과 함께 특성화와 정원감축 등이 필요한 대학이라는 점에서, 국립대학 육성사업에서도 이를 감안하여 지원 방식 등에 변경이 필요하다.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정부 재정지원]

대학 구분	구분 기준	대학 수			정원감축 권고	대학 재정지원		
		일반 대학 (187교)	전문 대학 (136교)	합 계 (323교)		일반재정지원	특수목적지원	
자율개선	진단대상대학 (323교)의 64%	120교	87교	207교	제외	전체 지원		
역량강화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대학(86교)을 재진단하여 80점 이상 대학은 역량 강화대학으로, 80점 미만 대학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구분	30교	36교	66교	일반대학 10% 전문대학 7%	일부 (20교 내외) 지원	신청 가능	
진단제외대학	종교계, 예·체능 계열, 편제완성 후 2년 미도래 대학 등	27교	3교	30교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I	점수 80점 미만 대학은 재정지원대학으로 구분하고, 점수에 따라 유형I과 유형II로 구분	4교	5교	9교	일반대학 15% 전문대학 10%	제한	제한
	유형II		6교	5교	11교	일반대학 35% 전문대학 30%		

자료: 교육부

19) 순천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 1-3. 산학협력 지원 사업의 성과평가와 연계한 예산 편성 필요

#### 가. 현황

산학협력 지원 사업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과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LINC+)으로 구성된다.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은 4년제 대학의 산학협력을 지원하는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R&D) 사업<sup>20)</sup>의 내역사업이다. 이 사업의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507억원(25.0%) 증액한 2,532억원이다.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LINC+) 사업<sup>21)</sup>은 전문대학의 산학협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151억원(19.2%) 증액한 938억원이다.

[2019년도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238,272	202,531	202,531	253,181	50,650	25.0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LINC+)	80,831	78,680	78,680	93,787	15,107	19.2

자료: 교육부

두 사업의 예산안 증액은 지원단가 인상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은 산학협력 고도화형과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으로 운영된다. 산학협력 고도화형은 대학이 산학협력 모델을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단가는 33억원에서 42억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예산안은 1,838억원에서 2,292억원으로 증액되었다.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은 대학과 협약기업이 채용약정을 맺고<sup>22)</sup> 협약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을 대학에 개설하는

20) 코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232-306

21) 코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603-300

22) 협약기업이 채용하지 않거나 학생이 해당기업으로 취업하지 않아도 별도의 조치는 없다.

사업으로 지원단가는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예산안은 187억원에서 240억원으로 증액되었다.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LINC+)도 산학협력 고도화형과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으로 운영되며, 산학협력 고도화형의 지원단가는 8.7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예산안은 13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증액되었다.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의 지원단가는 14.9억원에서 17.9억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예산안은 657억원에서 788억원으로 증액되었다.

[2019년도 산학협력 지원 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구분		산학협력 고도화형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사업내용		대학이 산학협력 모델을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지역기업(산업) 지원 및 인력양성, 산학연계 교육과정 등을 추진	대학별로 특성화된 산업분야의 개별 산업체(계)와 연계하여 대학의 교육과정 및 인력양성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지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4년제)	사업 예산	1,838억원(2018)→ 2,292억원(2019)	187억원(2018)→ 240억원(2019)
	학교 수	55교	20교
	지원 단가	33.42억원(2018)→ 41.67억원(2019)	9.34억원(2018)→ 12.00억원(2019)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육성(LINC+)(전문대)	사업 예산	130억원(2018)→ 150억원(2019)	656.8억원(2018)→ 787.87억원(2019)
	학교 수	15교	44교
	지원 단가	8.67억원(2018)→ 10억원(2019)	14.92억원(2018)→ 17.9억원(2019)

자료: 교육부

## 나. 분석의견

산학협력 지원 사업은 취업률 등 관련한 성과지표 개발과 이와 연계한 재정성  
과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에 대한 교육부의 성과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산학협력 고도화형’의 경우에는 취업실적에 대한 성과지표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의 경우 협약기업으로의 취업실적을 검토하고 있으나 협약기업 취업률이 저조한 학과가 다수 있으므로 성과관리가 필요하다.

4년제 지원 사업의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사업에는 2017년 20개 대학의 56개 학과에 653개 기업이 참여하여 채용약정 인원의 54.7%인 229명을 2018년 채용하였으며, 학과별로 취업률 편차가 심하여 0%인 학과도 10개(17.9%)에 달하였다. 전문대 지원 사업의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사업의 경우 채용약정 인원(5,232명) 중 2,463명(47.1%)이 채용되어 4년제 지원 사업 보다 취업률이 낮았으며, 10개 학과(3.6%)는 협약기업 취업률이 0%를 기록하였다. 다만, 2017년의 경우 실질적인 사업수행 기간이 7개월(2017.8.~2018.2.)로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으며, 해당학과의 전체 취업률(협약기업 뿐만 아니라 타기업 포함)은 4년제 71.4%, 전문대 69.1%로 협약기업 취업률 보다 높은 수준이다.

[2018년 사회맞춤형 중점형 참여학과의 취업률 분포]

취업률	협약기업 취업률							전체 취업률
	0%	0 초과 50% 미만	50% 초과 100% 미만	100%	4학년 참여대학생 없음	합계	평균 취업률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4년제								
학과수	10개	16개	20개	7개	3개	56개	54.7%	71.4%
비중	17.9%	28.6%	35.7%	12.5%	5.4%	100.0%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LINC+): 전문대								
학과수	10개	140개	117개	10개	-	277개	47.1%	69.1%
비중	3.6%	50.5%	42.2%	3.6%	-	100.0%		

주: 협약기업 취업률은 연계기업의 채용약정 인원 중 연계기업 취업자 비율, 전체취업률은 연계기업+비연계기업의 취업률

자료: 교육부

또한 청년일자리의 경우 임금수준, 고용형태 등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취업의 질에 대해서도 평가가 필요하지만, ‘산학협력 고도화형’과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모두 이에 대한 성과평가 및 관리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한편, 교육부의 성과지표 관리에 있어서도 사업성과를 측정하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 4년제 대학 지원사업에 대해 산학협력 고도화형과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을 분리하여 성과지표를 산출하지 않고 있으며 양적 지표인 산학연계 교육과정 운영건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다. 2019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성과지표는 동 사업 수행 대학의 산학연계 교육과정 수이며, 2,300건으로 설정되어 있다.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성과지표]

(단위: 건)

성과지표	구분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LINC 산학연계 교육과정 운영건수	목표	2,100	2,200	2,300	'18년 목표치 2,200건을 기준으로 5% 상승하도록 설정	LINC 사업 수행 대학의 산학연계 교육과정 수
	실적	2,105	-	-		
	달성도	100	-	-		

자료: 교육부

다만, 전문대 지원 사업의 경우 협약기업으로의 취업률을 성과지표로 산정하고 있으나, 산학협력 고도화형과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을 분리하여 성과지표를 산출하지 않고 있으며 고도화형에 대해서는 취업률 지표를 성과지표로 산정하지 않고 성과지표로는 미흡한 사업 참여 인력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어 4년제 대학 지원 사업과 동일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LINC+) 성과지표]

(단위: 건)

성과지표	구분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협약 기업으로의 연계 취업률 (단위: %)	목표	55	55	58	'17년 연계 취업률 55.1%→ '19년 재정지원사업 효과를 반영하여 58%를 목표치로 설정	취업률 = (협약기업 취업자 수 / 사회맞춤형 학과 참가자 수) × 100
	실적	55.1	-	-		
	달성도	100	-	-		
사업 참여 인력 만족도 (단위: 점)	목표	77	77	80	'18년 목표치(77점) 대비 3% 상향한 80점으로 설정	LINC사업에 참여하는 학생, 기업체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10점 척도로 조사 후 100점 기준 환산
	실적	77.2	-	-		
	달성도	100	-	-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이에 대해 산학협력 사업을 취업률, 임금 수준 등으로 관리하면 대학들이 취업률 달성에만 치중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취업률을 통한 대학의 서열화 우려가 있어 산학연계 인재양성 본연의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산학협력 사업은 주요 목적 중 하나가 대학의 취업률 제고라는 점을 고려할 때 취업성과에 대한 측정이 필요하므로 교육부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의 경우 참여기업과 채용약정을 체결 후 기업이 원하는 학과를 개설하는 것이므로 참여기업으로의 취업률이 중요한 성과지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산학연계 사업의 성과목표 중 하나로 취업률, 취업의 질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23)</sup>

교육부는 산학협력 사업의 예산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취업률, 취업의 질(임금 수준, 고용형태 등) 등과 관련한 성과지표를 추가로 개발하고, 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한 사업관리 및 재정지원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23) 교육부는 2019년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에서 산학협력 사업을 일반재정지원 사업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둔 것은 대학의 취업 수요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응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가. 현 황

지방교육재정교부금<sup>1)</sup>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역 간 균형 있는 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는 제도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지역현안, 재난안전관리, 국가시책)으로 구성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내국세 등에 연동되어 결정되며, 보통교부금은 ‘내국세×20.27%×97%+교육세 일부(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분 제외<sup>2)</sup>)’이다. 또한 특별교부금은 ‘내국세×20.27%×3%’이며 특별교부금은 지역현안특별교부금(30%),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10%), 국가시책특별교부금(60%)의 3가지 용도로 교부된다.

내국세 세수증가에 따라 2019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대비 6조 2,024억원 증액한 55조 7,431억원이다. 보통교부금은 54조 1,687억원이며, 특별교부금은 1조 5,744억원 규모이다.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예산현액(A) <sup>1)</sup>		B-A	(B-A)/A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47,185	495,407	495,407	557,431	62,024	12.5
보통교부금	430,145	476,956	481,569	541,687	60,118	12.5
특별교부금	17,040	18,451	13,838	15,744	1,906	13.8
- 지역현안	5,112	5,535	4,151	4,723	572	13.8
- 재난안전관리	1,704	1,845	1,384	1,574	190	13.7
- 국가시책	10,224	11,070	8,303	9,447	1,144	13.8

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분(2019년 1조 7,628억원) 제외

※ 교육세 전출분과 국고지원금을 합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규모는 3조 7,440억원

1) 교부금법 개정(2018.1.1.시행)에 따라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내국세분 배분비율이 조정(96:4→97:3)되어 특별교부금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예산 전용(4,613억원)

자료: 교육부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1500

2) 2017~2019년 3년 한시법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제정으로 누리과정 지원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유치원 교육비는 보통교부금 중 교육세로 지원되고 있다.

## 나. 분석의견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최근 3년간 증가추세에 이어, 2019년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반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지방교육채, 자체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교육비특별회계를 운용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로 결정되며, 2019년 교부금 산정대상이 되는 내국세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13.7% 증가한 259.3조원이며<sup>3)</sup>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안은 전년대비 12.5%(6조 2,024억원) 증가한 55.7조원이 편성되었다. 2019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율은 교육분야 총지출 증가율(10.4%) 보다 2.1%p 높은 수준이며, 정부 총지출 증가율(9.7%) 보다 2.8%p 높은 수준이다.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분야, 총지출 예산안 현황]

(단위: 조원, %)

	2018 예산 (A)	2019 예산안 (B)	증감	
			B-A	(B-A)/A
총지출	428.8	470.5	41.7	9.7
교육 분야	64.2	70.9	6.7	10.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9.5	55.7	6.2	12.5
내국세	228.0	259.3	31.3	13.7

주: 본예산 기준

자료: 교육부

2010~2018년 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본예산+추경증액분)의 연평균 증가율은 5.5%로 정부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5.0%)과 유사하나 0.5% 높다. 다만, 최근 3년간(2016-2018)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7.1%로, 정부 총지출 증

3) 2019년 교육세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4.2% 감소한 5조 255억원이다.

가율(4.2%)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학생수 등 교육수요 및 교육정책 보다는 내국세 세수규모에 자동으로 연동(내국세의 20.27%) 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정부 총지출 추이: 2010~2018년]

(단위: 억원, 조원, %)

구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정부 총지출
		본예산	추경	
2010	322,980	322,980	0	292.8
2011	352,831	352,831	0	309.1
2012	384,473	384,473	0	325.4
2013	410,619	410,619	0	349.0
2014	408,681	408,681	0	355.8
2015	394,056	394,056	0	384.7
2016	431,615	412,284	19,331	398.5
2017	447,185	429,317	17,868	410.0
2018	495,407	495,407	0	432.7
2010~2018년 연평균 증가율	5.5	5.5	-	5.0
2016~2018년 연평균 증가율	7.1	9.6	-	4.2

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추경편성으로 2016년 1조 9,331억원, 2017년 1조 7,868억원 규모의 추경증액분이 있었으며, 최종예산은 (본예산+추경증액분)을 합한 금액임  
자료: 교육부

한편 최근 2년 동안 내국세 수입 전망 오차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본예산과 최종분의 차이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년 연속 다음연도에 세계잉여금 처리를 통하여 정산<sup>4)</sup>되었으며, 그 규모도 2017년 1조 8,725억원, 2018년 2조 9,121억원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교육부는, 최근 3년간 증가추세에 이어, 2019년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되

4)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비용 보전을 위해 교육사업에 대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투자 여력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교육부는 지방교육채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채는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면서 부담하는 채무로서, 채무의 이행이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지는 지방채 증권 또는 차입금 형식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sup>5)</sup>

지방교육채 발행의 대부분은 교부금부담 교육채이며, 2013년부터는 교부금부담 교육채만 발행하였고 2017년 지방교육채 잔액(잔액 12조 1,071억원)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 또한 교부금부담 지방교육채 누적 규모는 2013년 2조 9,697억원에서 2017년 12조 1,071억원으로 증가하였다. 교부금부담 교육채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에 따라 발행하는 교육채로, 이는 학교신설 등 보통교부금 교부 산정 항목에 해당하는 통상적인 수요이지만 재원이 부족한 경우에 교육부 장관의 별도 승인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발행되고,<sup>6)</sup> 이 경우 향후 보통교부금으로 원금이자 상환을 담보(기준재정수요 산정기준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5)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6.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받은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6) 근거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1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등이다.

[연도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육채(누적채무) 현황]

(단위: 억원)

	2013	2014	2015	2016	201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0,619	408,681	394,056	431,615	447,185
신규	9,583	38,023	61,271	31,529	11,661
누적	29,697	47,187	107,169	134,564	121,071

주: 자체부담 교육채 잔액 일부 포함(2013년 268억원, 2014년 219억원, 2015년 73억원)

자료: 교육부

지방교육채 발행이 증가한 것은 내국세 증가율이 낮고(2014년, 2015년은 전년 대비 교부금 감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추가소요 등이 발생함에 따라 2014~2016년 발생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2015. 5. 13. 「지방재정법」의 개정(시행 2015. 11. 14.)을 통해 시·도교육청의 지방채의 발행요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sup>7)</sup>이나 통상적인 재정수요를 초과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을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2015~2016년 교부금 차액 보전과 명예퇴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지방채를 2조 2,712억원, 1조 1,000억원 규모로 발행 승인하였다. 다만, 교부금 차액보전이나 명예퇴직 비용 충당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부칙<sup>8)</sup>에 따라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었으므로, 현재는 동 사유를 이유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

7) 내국세나 교육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교부금을 조절할 수 있으며,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를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8) 부칙 <법률 제13283호, 2015. 5. 13.> 제2조(지방채의 발행에 관한 유효기간)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지방교육채 발행사유별 발행 현황]

(단위: 억원)

연도	사업명	발행 승인액	발행액
2013	학교신설	9,583	9,583
2014	학교신설	17,941	17,908
	'09년 공자기금 인수 지방채 차환	20,115	20,115
	합계	38,056	38,023
2015	학교신·증설비	22,494	43,139
	명예퇴직수당	11,000	
	교부금 차액 보전	10,000	
	소계	43,494	
	유치원신증설비	3,732	18,132
	교육환경개선비	14,400	
	소계	18,132	
합계	61,626	61,271	
2016	학교신·증설비	11,952	17,386
	교부금 차액 보전	12,712	
	소계	24,664	
	유치원신증설비	1,856	14,143
	교육환경개선비	12,287	
	소계	14,143	
합계	38,807	31,529	
2017	교육환경개선비	7,716	11,661

주: 1. 2013년부터는 교부금부담 지방교육채만 발행  
 2. 2016년의 경우 2017년으로 7,305억원 이월 발행 승인  
 3. 2017년의 경우 2018년으로 3,359억원 이월 발행 승인  
 자료: 교육부

한편, 2018년 1월 기준 지방교육채 원금에 대한 연도별 상환 계획에 따르면 2019~2033년간 상환해야 하는 원금은 10조 8,475억원이며, 추가로 이자액이 2조 941억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별 지방교육채 상환 예정액(2017년 말 기준)]

(단위: 억원)

연도	발행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			지방교육채 잔액
		원금	이자	계	
2018	3,359	15,955	3,042	18,997	108,475
2019	-	1,055	2,759	3,814	107,420
2020	-	1,747	2,679	4,426	105,673
2021	-	6,147	2,591	8,738	99,526
2022	-	9,299	2,453	11,752	90,227
2023	-	10,466	2,231	12,697	79,762
2024	-	10,801	1,973	12,774	68,960
2025	-	10,778	1,688	12,466	58,182
2026	-	10,717	1,416	12,133	47,465
2027	-	10,668	1,140	11,808	36,797
2028	-	10,668	872	11,540	26,129
2029	-	10,668	596	11,264	15,461
2030	-	8,968	343	9,311	6,493
2031	-	4,655	145	4,800	1,838
2032	-	1,502	45	1,547	336
2033	-	336	10	346	-
2019~2033년 합계	-	108,475	20,941	129,416	-

- 주: 1) 2018년에 2017년으로부터 이월된 지방채 3,359억원 전액 발행 가정  
 2) 2018년 보통교부금 교부에 따른 지방채 조기상환분 8,600억원 전액 상환 가정  
 3) 2017년 세계잉여금 정산분(2018년 4월) 중 지방채 조기상환분(2조원)은 이를 반영한 시·도교육청 추경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미반영  
 4) 2019년 이후의 지방채 발행은 고려하지 아니함  
 자료: 교육부

시·도교육청에서 발행하는 지방교육채는 교부금으로 원리금 상환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액은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sup>9)</sup> 산정 시에 반영되고 있다. 교육부는 세계잉여금 등 추가재정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방교육

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4조 제1항 관련)

채 조기상환을 추진하고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교부금 부담 지방교육채를 상환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 조기 상환 노력을 유도하는 등 지방교육채의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방교육채 전액이 교부금부담 교육채이고 원리금 상환 비용이 기준재정수요 산정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지방교육채 상환비용 보전을 위해 교육투자 여력이 감소할 가능성은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향후 교육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채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기준
8. 재정결합보전	가. 지방교육채상환	원리금 상환액	교육부장관이 원리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업의 원금상환액 및 이자액

### III

### 개별 사업 분석

#### 1

#### 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금의 사업취지를 고려한 집행 필요

##### 가. 현황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sup>1)</sup>은 대학생의 학비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중소기업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집행기관은 한국장학재단이다. 이 사업의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442억원 감소한 3조 9,986억원이다.

[2019년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3,933,259	3,995,772	4,042,786	3,998,603	△44,183	△1.1
- 국가장학금 지원	3,612,097	3,684,541	3,684,541	3,605,140	△79,401	△2.2
-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273,651	262,939	273,930	287,366	13,436	4.9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18,910	19,688	19,688	19,690	2	0
- 중소기업취업연계 (희망사다리)장학금 지원	28,601	28,604	64,627	86,407	21,780	33.7
II 유형 장학금	0	0	29,000	57,600	28,600	98.6

자료: 교육부

중소기업취업연계(희망사다리)장학금 지원 예산안은 전년보다 33.7% 증가한 864억원이다. 이는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3년 이상)인 대학생(1~4학년)(9,000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II유형이 2018년 추경에 신규 도입(290억원)되었으며, 2019년 예산안에는 9,000명을 지원하기 위한 2학기분이 편성되면서 576억원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이다.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2258-300

[II유형 장학금 예산안 편성 내역]

2018년 추경	2019년 예산안
9,000명 × 1학기 × 3.2백만원 = 29,000백만원	9,000명 × 2학기 × 3.2백만원 = 57,600백만원

자료: 교육부

II유형 장학금은 2018년 청년 일자리 대책사업으로 추경예산안에 편성되었으며, 중소·중견기업 취업 후 대학에 진학한 청년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선취업 후 진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교육부는 2018년 9월 현재 추경예산에 편성한 II유형 장학금 사업의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자를 선정 심사 중이다.

[2018년 중소기업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금 II유형 지원 요건]

구분	내용
지원 대상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3년 이상)인 대학생(1~4학년)
(연령)	연령제한 없음 * 단, 청년 일자리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청년층(만 34세 이하, 군복무기간·출산기간 반영 시 만 39세까지)에게 우대 지원
(학력)	고등학교 졸업자(단 전문대졸 이상 제외)
(재직기업 요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하 중소기업 등)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인력지원 특례) 상 중견기업 인력을 중소기업 인력으로 인정하는 규정 준용
(재직기간 요건)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 현재 재직기업 근무경력 및 이전 재직기업 근무경력을 합산하며, 이전 재직 기업의 유형 및 규모는 무관함
(성적)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100점 만점, 재학생만 해당)
대상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 제5호(원격대) 및 특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단, 2018년 대학구조개혁평가 재정지원 제한대학 중 E등급 지원 제한
지원 금액	신청 학기별 등록금 전액(계절학기 제외), 선정된 해당학기에 지원 하되,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자료: 교육부

## 나. 분석의견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II유형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II유형은 제도 도입 초기에 신청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과 등록금 수준이 낮은 사이버 대학 재학생 비중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8년도 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신청이 계획된 지원인원(9,000명) 보다 적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II유형의 2018년 신청경과를 보면, 최초 2주(2018. 8. 6. ~ 17.)간 신청기간을 운영하였으며, 2018.8.17. 기준 신청완료 인원은 총 4,042명(계획된 지원인원의 44.9%)이며, 지원인원 추가 확보를 위해 2018. 9. 6.까지로 신청기간을 연장하였으며, 2학기 지원 목표(9,000명) 대비 6,939명(77.1%)이 신청(2018. 9. 6.)하였다. 또한 이후 약 5주간(2018. 9. 19.~10. 26.)의 신청 기간을 추가 운영 중이며, 2018. 10. 16. 현재 7,907명(목표 인원의 87.9%)이 장학금을 신청하였다.<sup>2)</sup>

또한 교육부는 II유형 장학금의 지원단가를 연평균 등록금 640만원(한학기당 320만원)으로 가정하여 2019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등록금 수준이 이보다 적은 사이버대 및 방통대 재학생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청자 중 사이버대 및 방통대 재학생의 비중이 30.8%이며, 동 대학 연평균 등록금은 124만원으로 타 4년제 및 전문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

2) 2018. 8. 6. ~ 9. 6. 동안 신청한 6,939명은 재단 심사를 거쳐 2018. 10월 중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2018. 9. 19.부터 신청한 학생들은 이전기간 신청자와 별도로 선정하고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모집할 경우 지원인원을 충족할 수는 있으나 지급시기가 늦어지고 신청기간별로 별도로 심사하므로 지원대상자 선정에 형평성 문제 등 예산효율성이 저하될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1차에 신청자가 미달하여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신청자가 지원받을 수 있지만, 2차 신청기간 동안 신청자가 지원 가능한 인원 보다 초과할 경우 청년층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될 수 있으므로 적정 지원인원을 계획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8년 II 유형 장학금 참여자 대학정보]

(단위: 명, %, 천원)

대학구분	신청인원	비율	연평균 등록금
4년제 사이버대 및 방통대	2,438	30.8	1,241.5
사이버대	1,872	23.7	2,530.9
방통대	566	7.2	754.6
전문대	2,038	25.8	5,926.7
총합계	7,909	100.0	-

주: 연평균 등록금은 대학정보공시에 공개된 대학의 연평균 등록금 기준  
 자료: 교육부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II유형은 추경 사업의 신청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과 등록금 수준이 낮은 사이버 대학 재학생 비중이 30.8%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 일자리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다는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청년 참여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18년 청년 일자리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II유형 장학금을 도입하였으며, 이는 중소·중견기업 취업 후 대학에 진학한 청년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선취업 후진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2018년 II유형 장학금 추경 사업의 신청자 연령을 보면(10.16일까지 신청자 7,909명 기준) 정부가 지원목적으로 하는 청년층(만 34세 이하, 군필자는 만 39세까지)은 5,564명으로 전체 신청완료인원(7,909명) 대비 70.4%에 해당한다. 반면 청년층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는 29.6%이며, 50세 이상도 9.0%에 이르고 있다.

[연령대별 신청자 현황]

(단위: 명, %)

연 령	신청 인원			비율
	남	여	소계	
18세~20세 미만	48	43	91	1.2
20세 이상~30세 미만	1,842	2,660	4,502	56.9
30세 이상~40세 미만	752	577	1,329	16.8
(30세 이상~34세 이하)	371	219	590	7.5
(35세 이상~39세 이하)	381	358	739	9.3
40세 이상~50세 미만	458	821	1,279	16.2
50세 이상~60세 미만	238	399	637	8.1
60세 이상	46	25	71	0.9
합 계	3,384	4,525	7,909	100.0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청년 고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청년 우선지원 등 우선지원순위를 정해 놓았지만 신청자가 지원인원에 미달하여 최종 심사 합격자 전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지원순위 산정 기준(안)]

지원순위	우선 지원기준	기준 상세
1	청년	19세 이상~34세 이하 ※(예외인정) ① 35세 이상~39세 이하 중 군필자 ② 출산여성(자녀 1명당 현재 연령에서 1년 차감)
2	직업계고 졸업자	직업계고를 졸업한 학생
3	위탁과정 졸업	일반계고에 진학하였으나, 위탁과정 이수하여 졸업한 자
4	저학년	학년이 낮은 학생
5	장기재직자	재직기간이 긴 학생
6	성적 우수자	총 평균백분위 점수가 높은 학생

자료: 교육부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II유형의 취지가 청년 고용대책의 일환으로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년층이 아닌 신청자의 비중이 29.6%라는 것은 동 사업이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으며 청년고용창출 성과가 미흡하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청년의 참여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사업<sup>1)</sup>은 초등학교 돌봄 공간 확충에 소요되는 시설비(연간 700실, 실당 시설비 3천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2018~2022년 매년 700실의 초등돌봄교실을 확충한다는 국정과제에 따라, 2018년 추경에서 초등돌봄교실 700실 확충 사업비(210억원)가 반영되었으며,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규모이다.

[2019년도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0	0	21,000	21,000	0	0

자료: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사업은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이며 보조율은 100%이고, 17개 시·도교육청이 사업시행주체이다. 이는 현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초등돌봄교실을 포함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차원에서 돌봄교실 신규 구축 비용(실당 0.3억원)을 국고로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사업이다. 초등돌봄교실 시설비와 운영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sup>2)</sup> 산정 시에 반영되고 있다.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1031-314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 (제4조제1항 관련)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기준
7. 방과후 학교 사업비	다. 초등 돌봄교실 지원	학급수	전년도에 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에서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학급 수

## 나. 분석의견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사업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초등돌봄교실의 학기초 대기 수요를 흡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2019년에는 조기 교부를 통해 3월 학기와 연계하여 돌봄교실이 개설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은 돌봄수요가 학기초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방학 중에 돌봄교실을 설치하여, 학기 시작과 연계하여 운영을 개시하여 대기 학생 및 돌봄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초등돌봄교실은 2018년 추경에 시설비 중 신축 비용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현재 집행상황을 보면 대부분 돌봄교실이 2018년 9월 학기와 함께 운영이 시작되지 않아 추경 편성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2018. 9. 12. 현재 시·도교육청이 설치 완료한 돌봄교실은 계획한 물량 700개 중 155개에 불과하다. 돌봄교실 운영이 학기와 함께 개시되지 못한 것은 교육부가 2018년 추경예산을 시·도교육청의 6월 지방선거 및 추경 예산 편성 지연에 따른 교부 지원(6월 2.1%, 7월 31.7%, 8월 66.1%),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석면공사가 진행된 점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18년 시·도교육청별 초등돌봄교실 국고보조금 교부 및 설치 실적]

(단위: 실, 백만원)

시도	추경 예산		교부 실적			시도교육청 설치 실적	
	합계		6월	7월	8월	9월 12일	
	물량	교부금액	교부금액	교부금액	교부금액	물량	금액
서울	300	9,000	0	3,510	5,490	50	1,500
부산	7	210	0	210	0	5	150
대구	44	1,320	0	1,320	0	44	1,320
인천	1	30	0	30	0	1	30
광주	0	0	0	0	0	0	0
대전	1	30	0	0	30	1	30
울산	1	30	0	30	0	1	30
세종	6	180	0	0	180	6	180
경기	293	8,790	0	600	8,190	24	720
강원	20	600	0	600	0	9	264
충북	2	60	0	60	0	2	60

(단위: 실, 백만원)

시도	추경 예산		교부 실적			시도교육청 설치 실적	
	합계		6월	7월	8월	9월 12일	
	물량	교부금액	교부금액	교부금액	교부금액	물량	금액
충남	3	90	90	0	0	3	90
전북	12	360	360	0	0	9	270
전남	0	0	0	0	0	0	0
경북	10	300	0	300	0	0	0
경남	0	0	0	0	0	0	0
제주	0	0	0	0	0	0	0
합계	700	21,000	450 (2.1%)	6,660 (31.7%)	13,890 (66.1%)	155	4,644

주: ( ) 안의 숫자는 비중  
자료: 교육부

정부 및 학교의 돌봄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초등돌봄교실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에도 초등돌봄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19년에는 국고예산을 조기 교부하고 3월 학기와 연계하여 설치를 유도하여 초등돌봄교실을 개설함으로써 대기수요 등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사업은 돌봄수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지역별 합리적 배분을 위해 시·도교육청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면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초등돌봄교실 관련 사업비(시설비, 운영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에 포함되어 시·도교육청에 배분되었으나, 2018년 추경예산에서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사업(돌봄교실 신규 구축 비용 실당 0.3억원)이 국고로 편성되었으며, 동 사업은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보조율은 100%)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돌봄교실 확대 계획 수요 조사 결과 및 신청을 바탕으로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예산을 교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배분결과를 보면, 초등학생 비중, 대기자 수요 등 객관적인 요건 보다는 시·도교육청의 신청수요가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대기자/신청자 비중을 기준으로 볼 때, 서울시에 300개소(42.9%)가 배분되었는데, 대기자 수(11.1%), 초등학생 비중(15.7%)을 고려하더라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 또한 대구와 세종시의 경우 대기 수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44개(6.3%), 6개소(0.9%)가 배분되었다.

[2018년 초등돌봄교실 설치 및 이용자 현황]

(단위: 명, 개소, %)

시도	초등학생수		초등돌봄교실 설치 및 이용 현황				2018년 추경 배분		
			누적		이용		대기자 수	물량	비중
	교실수	비중	학생수	비중					
서울	424,800	15.7	1,730	14.0	36,833	14.1	1,126	300	42.9
부산	152,775	5.6	584	4.7	12,749	4.9	89	7	1.0
대구	125,160	4.6	443	3.6	9,365	3.6	0	44	6.3
인천	158,871	5.9	571	4.6	12,290	4.7	554	1	0.1
광주	88,622	3.3	291	2.3	6,195	2.4	256	0	0.0
대전	83,453	3.1	399	3.2	8,119	3.1	294	1	0.1
울산	67,290	2.5	276	2.2	6,153	2.4	135	1	0.1
세종	24,865	0.9	145	1.2	2,945	1.1	0	6	0.9
경기	752,499	27.8	2,933	23.7	58,354	22.3	3,918	293	41.9
강원	75,412	2.8	542	4.4	11,083	4.2	768	20	2.9
충북	85,344	3.1	450	3.6	9,427	3.6	182	2	0.3
충남	120,152	4.4	744	6.0	15,595	6.0	353	3	0.4
전북	97,606	3.6	756	6.1	16,653	6.4	968	12	1.7
전남	94,134	3.5	656	5.3	14,258	5.5	564	0	0.0
경북	129,290	4.8	797	6.4	16,302	6.2	317	10	1.4
경남	191,016	7.0	896	7.2	20,340	7.8	415	0	0.0
제주	40,096	1.5	185	1.5	4,626	1.8	195	0	0.0
합계	2,711,385	100.0	12,398	100.0	261,287	100.0	10,134	700	100.0

자료: 교육부(2017, 2018) 자체조사, 단 초등학생수는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조사(18.4.1기준)

교육부는 이에 대해 초등돌봄교실 설치에 교육감의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시·도교육청 신청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 별로 예산 부족, 재원 우선순위 등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돌봄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sup>3)</sup> 초등돌봄교실 확충 사업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니라 국고보조사업(보조율 100%)으로 편성한 것을 고려하여, 초등돌봄교실이 초등학생수, 돌봄교실 부족을 등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면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초등돌봄교실 시설비가 포함되어 시·도교육청에 교부되지만, 시·도교육청이 교부금을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17년 보통교부금에 초등돌봄교실 신축비, 운영비 등을 위한 수요산정액으로 5,01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시·도교육청은 이 중 3,602억원(71.9%)을 교육비특별회계에 초등돌봄교실 관련 예산으로 편성하고 3,540억원을 집행하였다.

## 가. 현 황

교육급여<sup>1)</sup>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기초생활보장급여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sup>2)</sup> 가구 초·중·고 학생의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4억 6,400만원 증액한 1,317억원이다.

[2019년도 교육급여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교육급여	100,625	131,244	131,244	131,708	464	0.4

자료: 교육부

빈곤층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2019년부터 교육급여 지원 항목 중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지원 단가를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인상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다. 부교재비의 경우 초등학교가 6.6만에서 13.2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중·고등학교는 10.5만원에서 20.9만원으로 인상되었다. 학용품비의 경우 초등학교가 5.0만원에서 7.1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중·고등학교는 5.7만원에서 8.1만원으로 인상되었다.

[학교급 및 항목별 지원 금액]

지원항목	학교급	최저교육비 <sup>3)</sup>	2018	2019
부교재비	초	131,208원	66,000원(50%)	132,000원(100%)
	중·고·특수	208,860원	105,000원(50%)	209,000원(100%)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1131-300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2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2015. 7. 시행)

지원항목	학교급	최저교육비 <sup>3)</sup>	2018	2019
학용품비	초	70,494원	50,000원(70%)	71,000원(100%)
	중·고·특수	80,826원	57,000원(70%)	81,000원(100%)
교과서대	고	-	95,000원	84,000원
입학금 및 수업료	고	-	1,335,400원	1,217,000원

주: ( ) 안은 최저교육비 대비 비율

자료: 교육부

이에 따라 부교재비의 경우 초등학교가 73억원에서 124억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중·고등학교는 208억원에서 339억원으로 증액되었다. 학용품비의 경우 초등학교가 55억원에서 67억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중·고등학교는 113억원에서 132억원으로 증액되었다.

#### [학교급 및 항목별 지원 금액]

(단위: 만원, 명, 백만원)

지원항목	학교급	2018			2019		
		단가	학생수	예산	단가	학생수	예산안
부교재비	초	6.6	135,036	7,287	13.2	115,943	12,449
	중·고·특수	10.5	242,735	20,841	20.9	199,661	33,942
학용품비	초	5.0	135,036	5,521	7.1	115,943	6,696
	중·고·특수	5.7	95,026	11,313	8.1	199,661	13,155
교과서대	고	9.5	141,274	10,974	8.4	114,830	7,846
입학금 및 수업료	고	133.5	68,378	74,666	121.7	57,612	57,030
합 계		-	377,771	130,603	-	315,504	131,118

자료: 교육부

3) 최저교육비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아를 실현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을 위해 지출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복지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을 책정하는 기준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여야 하며, 현재 최저교육비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보충교육비를 포함).

## 나. 분석의견

교육급여는 수급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지출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교육급여는 2015년 7월 맞춤형급여 개편에 따라 소득기준 상향(중위소득 40% →50%) 및 부양의무가 기준 폐지 등으로 수급자수가 급격히 증가(급여 개편 전 2015년 17만명→급여 개편 후 2016년 40만명)하였다.

이러한 수급자 수의 증가로 교육급여가 확대된 측면이 있지만 지원대상자 과다 추계로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6년에는 67.8만명 계획 대비 40.1만명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에는 43.2만명 계획 대비 35.2만명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7월 기준)에는 37.8만명 계획 대비 32.6만명을 지원하였다. 이에 따라 예산 집행도 2016년 77.0%, 2017년 74.6%, 2018년(9월 기준) 65.7%로 나타났다.

[교육급여 집행실적]

(단위: 천명, 백만원, %)

	2016			2017			2018			2019
	예산 (A)	결산 (B)	집행률 (B/A)	예산 (A)	결산 (B)	집행률 (B/A)	예산 (A)	집행 (B)	집행률 (B/A)	예산안
지원 인원수	678	401	59.1	432	352	81.5	378	326	86.2	316
금액	144,646	111,339	77.0	127,576	95,161	74.6	130,604	85,872	65.7	131,117

주: 시·도교육청(자치단체경상보조) 실집행액, 2018년은 9월말 기준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집행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에는 신규수급자 발생 규모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등 추계의 정확도를 개선하였지만, 2019년 예산안 편성시 적용한 학생수 감소율(통계청 전망치)은 실제 교육급여 수급자 감소율 보다 작다는 측면이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2017년 예산 편성시 학생수 감소율 2.62%를 적용하였으나 이는 실제 교육급여 수급자 감소율(12.3%) 보다 작았으며, 2018년 예산 편성시 적용한 학생수 감소율(3.22%)도 실제 2018년 수급자 감소율(7.2%) 보다 더 작았다.

[교육급여 수급자수 실적 및 전망]

(단위: 명, %)

기준	2016년 수급자	2017년 수급자	2018년 수급자	2019년 예상 수급자	증가율 추계치 (전체 학생수 감소율)			증가율 실적치	
					2017	2018	2019	2017	2018
초	135,395	119,935	115,297	115,943	0.45	1.80	0.56	△11.4	△3.9
중	102,706	88,594	80,934	78,789	△4.97	△3.02	△2.65	△13.7	△8.6
고	156,932	137,098	123,673	114,830	△3.74	△6.83	△7.15	△12.6	△9.8
(고)*	75284	66357	62048	57612	△3.74	△6.83	△7.15	△11.9	△6.5
특수	5,841	5,930	6,187	6,042	△2.14	△1.89	△2.34	1.5	4.3
합 계	400,874	351,557	326,091	315,604	△2.62	△2.84	△3.22	△12.3	△7.2

주: 1. 수급자수는 5월 기준

2. (고)\*는 고등학생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 특수학교는 초중고 전학년 재학 중이므로, 학생 수 변화율 평균 적용

자료: 교육부

다만, 교육부는 이에 대해 2017년부터 소득재산조사의 정확도가 향상되고 확인조사<sup>4)</sup>가 강화됨에 따라 급여 중 교육급여의 탈수급 비율이 높았으며, 2018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부터 기초연금 인상<sup>5)</sup> 및 최저임금 상승<sup>6)</sup>에 따른 근로소득 증가로 인한 급여 탈락자에 대해 2년간 급여 연장 지원을 실시(보건복지부 2018. 9. 20. 시행, 운영기간: 2018.10.1.~2021.4.30.)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19년에는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항목의 지원단가를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급여 보장수준이 확대되어 신규수급자 유입 가능성이 있어 예년에 비해 집행률이 제고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급여는 소득기준 상향 및 부양의무가 기준 폐지(2015년) 등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고 최근 최저임금의 인상 등으로 인해 탈수급자가 증가하면서 수급자수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다.

-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을 위해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을 일체 확인조사 실시(연간 2회)하며, 2017년에는 금융조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장 임대차보증금, 공동소유자동차, 전원세거래정보 등 4개 신규 재산정보를 추가 반영하는 등 확인조사를 강화하였다.
- 5) 2018년 하반기 및 2019년 상반기 확인조사시 기초연금 인상으로 급여 탈락하는 가구의 경우 2년간 급여 내용 및 금액 변경 없이 자격 유지
- 6) 타 소득 재산의 변동없이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한 근로소득 증가로 급여에서 탈락하는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2년간 급여 연장 지원

따라서 교육급여는 수급자로 선정되면 의무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지출이라는 점과 집행실적이 저조하면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는 교육급여에 대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업<sup>1)</sup>은 대학생들에게 해외 산업현장 실무경험 등 다양한 글로벌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경력 및 진로 설계를 돕고, 이를 통해 글로벌 감각을 갖춘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6억원(13.4%) 증액된 139억원이다.

[2019년도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9,582	12,251	12,251	13,896	1,645	13.4
-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625	621	621	621	0	0
-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3,620	3,256	3,256	3,256	0	0
- 한미대학생연수(WEST)	5,337	5,124	5,124	5,199	75	1.5
- 파란사다리	0	3,250	3,250	4,820	1,570	48.3

자료: 교육부

2019년 예산안 증액은 파란사다리 사업의 예산안이 전년대비 16억원(48.3%) 증액되었기 때문이다. 파란사다리 사업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대학생<sup>2)</sup>에게 진로개발을 위한 해외 대학에서의 연수, 진로·문화체험 등의 기회(4주간의 해외 연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8년에 신규 도입되었으며 2019년에는 전년도 800명에서 1,200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동 사업은 학생 1인당 평균 350만원 내외 지원(항공료, 보험료, 현지 교육비, 현지 관리운영비, 체재비(일부)를 지원하는데, 정부가 사업비의 70%를 지원하고 주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2232-306

2) 경제적 취약학생: 소득분위 10분위 중 5분위 이내의 학생, 사회적 취약학생: 장애학생,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 탈북 학생

관대학은 나머지 30%를 부담한다. 현지 교통비, 식비 등 현지 체류에 필요한 필수적인 비용은 학생이 자비로 부담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득분위를 고려하여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수행 방식을 보면 한국장학재단이 위탁운영하며 사업위탁기관이 대학별 사업 계획서를 평가하여 주관대학을 선정(권역을 고려해 10개 내외의 거점 대학 선정)한다. 참여 학생 선발은 주관대학에서 서류 심사(1차)를 통해 참여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면접(2차)을 통해 활동 계획서를 기반으로 한 학습 계획, 참여 의지 등을 평가하여 이루어진다.

#### 나. 분석의견

파란사다리 사업 추진시 저소득층 지원 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 사업지침인 「파란사다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주관대학은 선발 인원의 80~90%를 본교생으로 하고 10~20%를 타교생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타교생 비율이 높을수록 주관대학 선정 시 우대한다. 이에 따라 2018년 파란사다리 사업의 지원학생 819명 중 주관대학 학생은 10개교에 650명(79.4%), 타교 학생은 119개교에 169명(20.6%)이 지원되어 주관대학 학생의 지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018년 파란사다리 지원학생 선발 현황]

(단위: 명, %)

구분			학생 선발 현황		
			본교	타교	합계
주관 대학 (10)	수도권	건국대	63(1개교)	7(6개교)	70(7개교)
		삼육대	64(1개교)	16(10개교)	80(11개교)
		아주대	80(1개교)	20(16개교)	100(17개교)
		한경대	60(1개교)	10(9개교)	70(10개교)
	충청 강원권	강원대	72(1개교)	18(13개교)	90(14개교)
		충남대	56(1개교)	24(24개교)	80(25개교)
	호남 제주권	전북대	72(1개교)	18(10개교)	90(11개교)

(단위: 명, %)

구분			학생 선발 현황		
			본교	타교	합계
대구 경북권	대구대	63(1개교)	16(11개교)	79(12개교)	
	대구 가톨릭대	60(1개교)	20(6개교)	80(7개교)	
부산 경남권	동의대	60(1개교)	20(14개교)	80(15개교)	
합 계			650(10개교)	169(119개교)	819(129개교)
			79.4	20.6	100.0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이에 대해 주관대학이 본교생은 물론 타교생에 대해서도 사업비의 30%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해외 대학과 학생 교류 협약 등이 체결되어 연수가 가능한 대학이 사업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 역량과 의지를 가진 주관대학을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주관대학 학생 위주로 지원되면 동사업은 저소득층 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낮은 계층을 우선 지원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경제적 취약자에 대해 본교와 타교를 분리하여 소득계층별 분포를 보면 본교의 경우 2분위~5분위의 비중이 높은 반면 타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관대학의 4분위~5분위 학생이 참여하고 타학교의 기초 및 차상위 학생 등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취약계층 선발 현황]

(단위: 명)

경제적 취약							사회적 취약	
기초	차상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북한 이탈자주민	장애인
139	77	203	117	134	109	29	2	9

자료: 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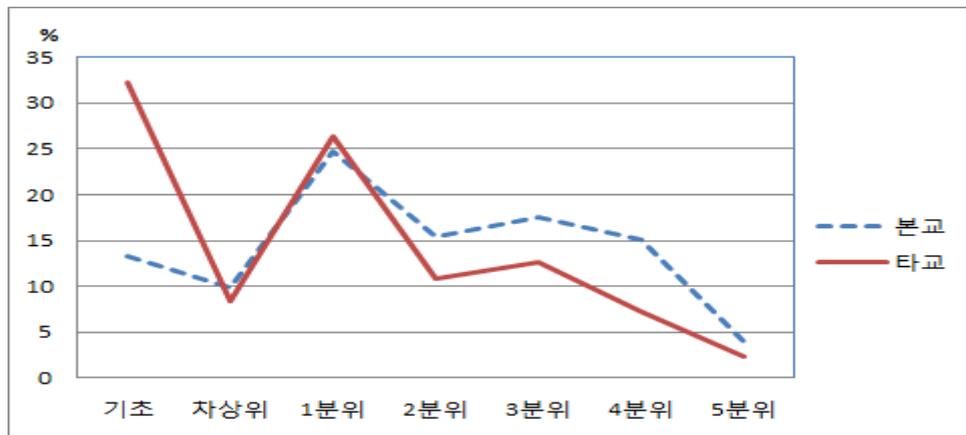
[경제적 취약자 선발 현황]

(단위: 명, %)

	기초	차상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합계
본교	139	77	203	117	134	109	29	641
(비중)	13.3	9.8	24.8	15.4	17.6	15.1	3.9	100.0
타교	54	14	44	18	21	12	4	167
(비중)	32.3	8.4	26.3	10.8	12.6	7.2	2.4	100.0

자료: 교육부

[경제적 취약자의 소득분위별 비중]



자료: 교육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동 사업이 저소득 가구 대학생에 대해 해외연수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소득이 낮은 가구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현재 보다 소득이 낮은 가구의 지원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추진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교육정책이해도 제고 사업<sup>1)</sup>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교육정보를 모바일, 생활 밀착형 홍보매체(전광판 등), 정기 간행물 등을 통해 정책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쉽게 설명하여 교육정책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를 제고하는 사업다. 이 사업의 2019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6억원 증액한 20억원이다.

[2019년도 교육정책이해도 제고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교육정책이해도 제고	1,092	1,419	1,419	2,041	622	43.8
- 교육정책 정보 제공 및 홍보	736	830	830	961	131	15.8
- 온라인 매체 운영	65	65	65	56	△9	△13.8
- 뉴미디어 서비스 운영	238	460	460	460	0	0
- 온라인 모니터링 운영	53	64	64	64	0	0
- 디지털소통팀 운영지원	0	0	0	500	500	순증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온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교육정책 홍보 추진을 위해 기존 “소통지원팀”을 “디지털소통팀”으로 확대·개편하고 디지털 콘텐츠 기획·개발·제작 등의 업무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위해 2018년 9월부터 전문임기제 나급 1명(콘텐츠기획·메시지개발), 다급 2명(영상제작 및 이미지제작)을 충원하였다.<sup>2)</sup>

2019년 예산 증액은 디지털소통팀 운영지원 내역사업을 5억원 규모로 신규 편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7031-300

2) 행정안전부는 디지털소통 전담조직 설치 대상 13개 부처\*를 선정하여 전문임기제 공무원(작가, 디자이너, 영상촬영·편집 등) 3명씩 증원(2018.5.29.)

\* 국무총리비서실, 기재부, 교육부, 중기부, 국토부, 과기부, 행안부, 농식품부, 복지부, 고용부, 환경부, 해수부, 문체부

성하였기 때문이며, 이는 전문임기제 3명(카피 라이터, 영상촬영·편집, 그래픽 디자인)을 채용하여 교육정책의 홍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콘텐츠를 상시적으로 제작하고 이를 온/오프라인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송출을 확대하기 위한 비용을 증액하였다.

[2019년도 교육정책이해도 제고 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추진 과제	2018 예산(A)	2019 예산안(B)	증감(B-A)
교육정책 정보제공	830	961	131
- 월간지(행복한교육) 발행	260	536	276
- 교육정보 웹진발행	36	36	0
- 우수사례 홍보 및 정책설명자료 배포	364	265	△99
- 교육현장 맞춤형 홍보 콘텐츠 제작	146	100	△46
- 찾아가는 소통 마당 개최	24	24	0
온라인 매체 운영	65	56	△9
뉴미디어 서비스 운영	460	460	0
- 블로그, SNS 등 뉴미디어 채널 위탁 운영	260	260	0
- 온교육 소통사이트 운영 및 교육정책 홍보 콘텐츠 제작	200	200	0
온라인 모니터링 운영	64	64	0
디지털소통팀 운영지원(신규)	0	500	500
- 촬영·편집장비, 시설 등 인프라 구축	0	70	70
- 콘텐츠 제작·편집 SW 구축	0	20	20
- 콘텐츠 유통, 송출 등 확산	0	410	410
합 계	1,419	2,041	622

자료: 교육부

#### 나. 분석의견

홍보콘텐츠 직접 제작 인력 채용을 위한 예산이 증액되었으므로 기존 외주제작과 직접제작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교육정책 등의 홍보를 홍보콘텐츠를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식<sup>3)</sup>과 뉴미디어 서비스를 운영하는 방식<sup>4)</sup>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홍보콘텐츠를 외주 방식으로 제작해 왔으나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전문임기제 3명(카피 라이터, 영상촬영·편집, 그래픽 디자인)을 직접 채용하고 관련 장비를 상시적으로 배치하여 홍보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는 방식을 추가하였다.

직접 채용을 통한 제작 방식을 도입한 이유는 이전보다 다량의 홍보콘텐츠를 제작하여 송출 횟수를 늘여 상시 홍보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예산을 증액하였다. 예산 증액(5억원)의 내용은 자체 제작을 위한 장비 및 프로그램 예산(약 1억원)과 자체 제작된 콘텐츠를 송출·확산하기 위한 매체홍보(광고) 예산(4.1억원)이다.

[2018~2019년도 홍보 예산(안) 편성 내역]

	2018년	2019년(안)
제작인력	외주	직접 채용 - 전문임기제 3명(카피 라이터, 영상촬영·편집, 그래픽 디자인)
직접 제작 비용	-	- 촬영·편집장비, 시설 등 인프라 구축(0.7억원) - 콘텐츠 제작·편집 SW 구축(0.2억원)
홍보콘텐츠 제작 및 송출	- 외주 제작 - 월 평균 1.8건 제작, 3건 송출(설, 추석, 연말) - 외주 제작 예산(5.75억원) · 우수사례 홍보 및 정책설명자료 배포, 교육현장 맞춤형 홍보 콘텐츠 제작, 온라인 매체 운영	- 외주 및 직접제작 병행 - 월 평균 3.5건 이상 제작, 10건 이상 송출(상시홍보) - 외주 제작 예산(4.21억원) · 우수사례 홍보 및 정책설명자료 배포, 교육현장 맞춤형 홍보 콘텐츠 제작, 온라인 매체 운영 - (은)오프라인 송출비: 4.1억원

3) 홍보영상 등을 제작하여 아파트 엘리베이터, KTX, 버스승강장, 지하철 행선안내기 등 오프라인 매체와 기타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송출

4) 블로그 등 뉴미디어 채널 운영, 웹툰, 웹드라마 등 온교육 소통사이트 운영

	2018년	2019년(안)
뉴미디어 서비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주 제작</li> <li>- 블로그, SNS 등 뉴미디어 채널 위탁 운영 2.6억원</li> <li>- 온교육 소통사이트 운영 및 교육정책 홍보 콘텐츠 제작(2억원)</li> <li>· 웹툰, 웹드라마, 참여형 이벤트, 온라인 LIVE 등 콘텐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주 제작</li> <li>- 블로그, SNS 등 뉴미디어 채널 위탁 운영 2.6억원</li> <li>- 온교육 소통사이트 운영 및 교육정책 홍보 콘텐츠 제작(2억원)</li> <li>· 웹툰, 웹드라마, 참여형 이벤트, 온라인 LIVE 등 콘텐츠</li> </ul>

자료: 교육부

다만 교육부는 2019년 홍보콘텐츠를 직접 제작한다는 계획에도 불구하고 기존 외주 제작 예산을 1.54억원(26.8%) 감축(2018년 5.75억원→2019년 4.21억원)하는데 그쳤으며, 외주제작과 직접제작 간 명확한 업무 분장에 근거하여 산출한 것이 아니라는 문제가 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2019년 외주제작 예산에는 콘텐츠 외주제작 이외에도 매체 송출, 홍보 물품(리플릿, 배너, 캘린더 등) 배포를 위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콘텐츠 제작수요가 집중되는 설, 추석, 연말 홍보 시 2명의 제작 인력으로는 해당 제작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 예상되어 보충적으로 외주제작을 활용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송출 예산을 구분하지 않고 편성할 경우 필요에 따라 송출 예산이 제작 예산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 또한 외주제작과 직접제작에 대한 업무 계획을 명확히 수립하지 않을 경우 외주제작 예산이 과다하여 예산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2019년 외주제작과 송출 예산을 명확히 구분하여 편성하고 외주제작과 직접제작 간 업무 분장도 명확히 함으로써, 홍보콘텐츠 직접제작 방식을 도입한 취지 및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서울대학교 출연지원<sup>1)</sup>은 국립대법인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 인건비 및 기본운영비,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교육·연구시설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출연사업이다. 이 사업의 2019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197억원 증가한 4,568억원이다.

[2019년도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452,688	437,148	437,148	456,820	19,672	4.5

자료: 교육부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2011년말 법인화되었으며, 2014년부터 서울대학교에 대한 출연금은 이전의 항목별 예산 편성 방식에서 대학의 중장기적 발전계획과 성과 등을 바탕으로 총액으로 편성·교부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총액 편성은 서울대학교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통해 안정적 재정지원을 보장하는 한편 대학법인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출연금 산정시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sup>2)</sup> 및 제32조제2항<sup>3)</sup>에 따라 종전의 서울대학교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2742-300

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방법 등)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및 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출연(出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종전의 서울대학교의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출연금을 산정한다.

③·④ (생략)

증가율, 대학운영계획운영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9년도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사업의 예산안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서울대학교 본교 운영에 4,295억원, 부설학교 운영에 273억원이 편성되었다. 본교 운영의 경우 인건비는 전년대비 8.0% 증가한 2,604억원, 운영비는 전년대비 14.5% 감소한 365억원<sup>4)</sup>, 사업비는 전년대비 5.5% 증가한 1,138억원, 성과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한 189억원을 편성하였다.

[2019년도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예산(A)	2019 예산안(B)	증감	
			B-A	(B-A)/A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437,148	456,820	19,672	4.5
■ 서울대학교 운영	410,386	429,520	19,134	4.7
인건비	241,048	260,374	19,326	8.0
운영비	42,619	36,450	△6,169	△14.5
사업비	107,779	113,756	5,977	5.5
성과사업비	18,940	18,940	0	0
■ 부설학교 운영	26,762	27,300	538	2.0
인건비	15,373	15,650	277	1.8
운영비	2,289	2,357	68	3.0
사업비	2,786	2,979	193	6.9
시설사업비	6,314	6,314	0	0

- 주: 1. 기존 운영비 내 '시설관리직 운영'을 인건비로 변경 및 최저임금 인상분 등으로 인건비 증액  
 2. '시설관리직 운영'을 운영비에서 인건비로 변경하여 운영비 감액  
 3. 부설학교는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여자중학교,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의 4개임

자료: 교육부

- 3)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대학운영계획의 수립·평가 및 국가의 지원)  
 ① 총장은 4년 단위로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학운영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대학운영성과목표를 반영한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의 운영성과를 매년 평가·공표하고, 그 결과를 행정 및 재정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 4) 기존 운영비 내 '시설관리직 운영'을 인건비로 변경 및 최저임금 인상분 등으로 인건비 증액, '시설관리직 운영'을 운영비에서 인건비로 변경하여 운영비 감액

## 나. 분석의견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교육부는 출연금 총액 편성 시 자체재원 규모, 법률에 명시된 출연금 산정기준 등의 근거를 활용하여 출연금 규모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9년 서울대학교 출연금은 전년대비 4.5% 증가한 4,568억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법인화 이후 2013~2016년 동안 출연금 예산은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나, 2017~2018년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2019년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된 것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2019년 예산안 편성시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증가율 등을 반영한 것이며 구체적인 기준에 기초하여 산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법인화 이후 서울대학교 출연금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안)
출연금 예산액	340,871	369,738	408,346	437,300	455,188	452,688	437,148	456,820
- 서울대학교 운영	340,871	369,738	386,710	405,458	427,018	424,518	410,386	429,520
- 서울대학교 부설학교 운영	-	-	21,636	31,842	28,170	28,170	26,762	27,300
증가율	-	8.5	10.4	7.1	4.1	△0.5	△3.4	4.5

자료: 교육부

그러나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출연금 산정 시 과거 출연금 비중의 적정성, 자체수입 확보 가능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인화 초기에는 안정적인 재정지원의 필요성으로 출연금 증가율이 높았지만 2015년 이후 등록금 수입이 늘어나고 2017년 기타수입이 증액되어 자체재원 규모가 확대되었다. 구체적으로 등록금 수입은 2012년 1,867억원에서 2014년 1,850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18년 1,893억원으로 증가하였다. 기타수입은 2012년 1,101억원에서 2018년 1,709억원으로 증가하였다.

[법인화 이후 출연금 비중]

(단위: 억원, %)

연 도	법인회계 (d=a+b+c)	항목별 금액 및 구성비				
		출연금(a)			등록금 (b)	기타 (c)
		본교	부설학교	소계		
2012	6,377(100)	3,409 (53.5)	-	3,409 (53.5)	1,867 (29.3)	1,101 (17.3)
2013	6,888(100)	3,697 (53.7)	-	3,697 (53.7)	1,851 (26.9)	1,340 (19.5)
2014	7,421(100)	3,867 (52.1)	216 (2.9)	4,083 (55.0)	1,850 (24.9)	1,488 (20.1)
2015	7,711(100)	4,055 (52.6)	318 (4.1)	4,373 (56.7)	1,858 (24.1)	1,480 (19.2)
2016	7,845(100)	4,270 (54.4)	282 (3.6)	4,552 (58.0)	1,891 (24.1)	1,402 (17.9)
2017	8,031(100)	4,245 (52.9)	282 (3.5)	4,527 (56.4)	1,899 (23.7)	1,605 (19.9)
2018	7,973(100)	4,104 (51.5)	267 (3.3)	4,371 (54.8)	1,893 (23.7)	1,709 (21.4)

주: 출연금 및 등록금 외 타회계 전입금, 이월금, 교육부대수입, 수입대체경비, 보조금 등을 기타로 계상(2017년 기준 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618억원, 보조금 415억원, 교내 타회계 전입금 142억원 등)

자료: 교육부

또한 서울대학교의 연도별 자체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결산 금액이 예산을 초과하고 있어 자체수입 예산이 과소하게 예측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2~2017년 동안 자체수입 결산 금액이 예산 금액을 초과한 비율은 6.9%~21.6%를 기록하였다.

[서울대학교 자체수입 예산 및 결산 현황]

(단위: 억원, %)

회계연도	예산(A)	결산(B)	비율(B/A)
2012	2,910	3,110	106.9
2013	3,133	3,460	110.4
2014	3,288	3,546	107.8
2015	3,315	3,698	111.6
2016	3,267	3,973	121.6
2017	3,429	4,048	118.1

주: 출연금, 보조금을 제외한 세입 예·결산 금액을 자체수입으로 계상

자료: 교육부

또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종전의 서울대학교의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을 고려하여 매년 출연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따라서 국립대 법인화의 취지가 자율적 재정집행과 성과에 기반한 책무성 강화에 있는 만큼, 서울대학교 출연금 총액 편성시 구체적인 기준 없이 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교육부는 서울대학교로 하여금 자체재원 확충 계획 등을 마련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적절성과 법률에 규정한 산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출연금 산정 기준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과사업비 산정 근거 중 재정기반 강화 관련 성과지표가 적절하게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

성과사업비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학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재정적 지원에 반영한 것이다.

재정지원 반영 수준은 현행 성과 평가결과와 전년 대비 성과평가결과 향상도, 외부기관(국회, 감사원 등) 지적사항 개선 노력도, 법인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립대학법인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교육부는 서울대학교에 대해 2012~2015년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15~2018년 동안 매년 189억원~228억원의 성과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2017년에 실시한 2016년 대학운영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2019년 성과사업비 예산안을 전년도와 같은 수준(189억원)으로 편성하였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재정기반 강화 성과지표<sup>5)</sup>에 대해 3개로 하위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3개의 성과목표는 발전기금 모금액,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회계운영 시스템의 표준화로 구성되어 있어, 법인으로서 재정기반 확충을 평가하는 지표로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또한 발전기금 모금액 성과지표 산출근거를 보면 2006~2015년(과거 10년) 평균치를 성과목표치로 활용하면서 최근 증가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성과목표치(2016년 803억원)를 실적치 보다 낮게 설정한 문제가 있다. 서울대학교의 발전기금

5) 성과지표는 ‘공동체적 가치를 구현하는 선한인재 양성’, ‘세계적인 연구성과 창출’, ‘공교육 정상화 및 내실화 기여’, ‘세계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한 재정기반 강화’ 등 총 13개이다.

모금액은 실제 2014년 972억원, 2015년 1,626억원을 기록하였으며, 2016년 실제로 발전기금 모금액은 1,003억원으로 목표치를 200억원(25%) 상회하였다.<sup>6)</sup>

[서울대학교 성과지표]

(단위: 억원)

성과지표	성과목표	목표치				목표치 산출근거
		2016	2017	2018	2019	
세계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한 재정기반 강화	발전기금 모금액	803	828	852	878	이전 10년간(06~15) 모금액의 평균 780억원을 기초로 연 3%씩 증가하는 것을 목표치로 설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정성	정성	정성	정성	통합재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활용
	회계운영 시스템의 표준화	정성	정성	정성	정성	회계운영시스템의 표준화 및 재무정보 공시체계 수립을 위한 인프라 개선 노력(정성평가)

자료: 교육부

반면 교육부 소관 국립대법인인 인천대학교의 경우 세입 중 등록금 비율(%)과 세입중 기부금 비율(%)을 재정관련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자체수입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등록금 확보를 정량적인 지표로 포함하고 있으며 최근 실적을 목표치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재정기반 강화 관련 성과를 측정하기에 적절한 측면이 있다.

6) 교육부는 이에 대해 2015년 및 2016년은 관정도서관, 우석경제관 등 거액의 시설기부가 포함되어 있어 목표치를 상회하였으나 향후에는 해당 목표치 달성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인천대학교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목표치			목표치 산출근거
		2014	2015	2016	
운영재원 확보 최대화	세입 중 등록금 비율(%)	50.9	49.5	48.1	세입여건 등을 고려, 연 3% 개선 목표
	세입중 기부금 비율(%)	0.62	0.66	0.69	2014년 5대 거점 국립대 대비 비율 13.6%

자료: 교육부

국립대법인은 법인으로서 자체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양한 성과지표 중 재정기반 강화 관련 성과지표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정기반 강화 관련 성과지표에 대해 적절한 성과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사업비를 합리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 지원 사업<sup>1)</sup>은 「진로교육법」(2015.6.22. 제정)에 따라 국가 수준의 진로교육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하는 사업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센터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이 사업의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6,900만원을 증액한 4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19년도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 지원	256	356	356	425	69	19.4

자료: 교육부

2019년 예산안이 증액된 것은 성인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 신규로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성인 진로교육 관계자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 2,400만원, 성인의 진로탄력성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운영이 5,500만원 규모이다.

[2019년도 성인 진로교육 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 성인 진로교육 관계자 역량 강화: 12백만원×2회(회당 연수인원 100명)
- 성인의 진로탄력성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운영: 55백만원(55백만원×1식)

자료: 교육부

성인 진로교육 관계자 역량 강화는 2019년도 하반기 중 1회 지역 및 대학 내 평생교육원 또는 성인교육 기관 소속 강사, 프로그램 기획자, 관련 업무 관계자 등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4031-301

성인(평생학습자) 진로 관련 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성인 진로교육 인식 제고, 관련 프로그램 활용 안내 및 관련 담당자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성인의 진로탄력성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운영은 경력 단절, 실직 등 진로변화를 겪는 성인을 대상으로 진로 분석, 진단, 상담 등 맞춤형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2의 인생·경력 설계를 준비해야 하는 40~50대의 성인이 자신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하여 경력을 재설계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소규모(10명 내외) 집단을 구성하여 총 20시간(연속 4일, 1일 5시간)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나. 분석의견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성인 진로교육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가진로교육센터는 성인 진로교육 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측면이 있다.**

「진로교육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초·중등학교와 대학의 학생을 지원대상으로 한다.<sup>2)</sup>

### 2) 「진로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진로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로교육"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학생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진로상담"이란 학생에게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온라인으로 하는 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진로체험"이란 학생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진로정보"란 학생이 진로를 선택할 때 필요로 하는 정보로 개인에 대한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환경에 대한 정보 등을 말한다.
5. "수업"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 따른 수업을 말한다.

국가진로교육센터는 이러한 「진로교육법」 제15조<sup>3)</sup>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초·중등학교와 대학의 학생의 진로교육을 위하여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 개발, 진로정보망 구축·운영, 진로심리검사 개발, 진로상담 지원,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진로진담교사 교육, 진로교육 현황조사 및 평가, 진로교육에 관한 국제 교류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교육부가 2019년에 신규 편성한 국가진로교육센터 사업은 「진로교육법」의 지원대상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이므로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업무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진로교육법」 제5조제2항<sup>4)</sup> 중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학생, 학교 밖 청소년, 경력단절자 및 실직자”로 확대하는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sup>5)</sup>이 발의된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법 개정 추이를 보아가며 예산편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로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진로교육법」

제15조(국가진로교육센터)

- ①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진담기관을 지정하여 진로교육센터(이하 “국가진로교육센터”라 한다.)로 운영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진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 개발
  2. 진로정보망 구축·운영
  3. 진로심리검사 개발
  4. 진로상담 지원
  5.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6.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7. 진로진담교사 교육
  8. 진로교육 현황조사 및 평가
  9. 진로교육에 관한 국제 교류·협력
  10.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 ③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4) 「진로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생략.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생략.

5) 오영훈의원 대표발의, 2018. 6. 28.

둘째,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성인 진로교육은 고용노동부 소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여성가족부 소관 새일센터 등에서 추진하는 취업지원 서비스와 유사하다.

성인 진로교육(국가진로교육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고용노동부), 새일센터(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는 모두 40~50대의 실직자, 전직자 및 경력단절여성을 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서비스도 경력재설계, 전직지원, 구직지원 등으로 유사하다.

[국가진로교육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새일센터 비교]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성인 진로 교육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새일센터
소관부처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도입시기	2019년 신규	2006년	2009년
예산 규모 (2019년)	7,900만원	18,734백만원	56,471백만원(여성가족부) 11,526백만원(고용노동부)
기관수	1개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국 32개소 (노사발전재단, 경총, 상의)	163개소
사업내용	- 지원대상: 직업경력이 있는 40~50대의 성인 - 지원서비스: 심층적인 자기이해, 일과 생애의 이해, 변화 대응력 향상, 경력 재설계	- 지원대상: 40~50대 중장년 - 지원서비스: 기업 맞춤형 인재 추천, 중장년을 위 한 생애경력설계서 비스부터 퇴직예정 중장년을 위한 전 직스쿨프로그램, 구 직자 재취업 지원 을 위한 재도약프 로그램 등의 종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 지원대상: 경력단절여성 - 지원서비스: 상담,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자료: 교육부

사업내용은 유사하지만 서비스 인프라 측면에서 국가진로교육센터는 1개소임

에도 불구하고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전국 32개소, 새일센터는 전국 163개소가 분포하고 있으므로, 접근성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타 부처 소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존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 소관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성인 진로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성인 진로교육을 별도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가. 현황

과학기술인재육성 사업<sup>1)</sup>은 미래 융·복합, 지능정보사회에 필요한 창의융합형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과학·수학에 특화된 학교 운영, 교육과정·교과서 모형개발·교사 연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5억 6,000만원(6.0%) 증액된 99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18년도 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	9,260	9,410	9,410	9,970	560	6.0
- 과학수학교육내실화	6,390	6,390	6,390	6,230	△160	△2.5
- 대학단계 프로그램	1,220	1,220	1,220	1,220	0	0
- 융합형 인재 역량 강화	1,650	1,800	1,800	1,800	0	0
- 무한상상실 구축·운영	0	0	0	720	720	순증

자료: 교육부

신규 내역사업인 무한상상실 구축·운영이 2019년도 예산안에 7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하여 국립중학교(7교)에 무한상상실<sup>2)</sup>의 설치·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2022년까지 모든 국립 초·중·고(34개)에 무한상상실 구축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며, 2019년에는 7개 국립중학교에 설치하기 위한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1403-403

2) 학생의 창의성, 상상력,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실험·제작을 하거나 UCC 제작·스토리 창작 등을 할 수 있는 공간

## 나. 분석의견

무한상상실 구축·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창의융합교육 활성화 기반 구축이라는 사업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한상상실 설치 지원에 대한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가 무한상상실 구축을 지원하는 취지는 창의융합교육 활성화 기반을 구축이고 이를 위해 전체 국립초·중·고에 무한상상실을 설치할 계획이며, 2019년에는 먼저 국립중학교에 설치한다. 국립 초·중·고에 지원하는 이유는 공립과 사립의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국립의 경우 무한상상실 설치가 전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립의 경우도 교육부가 지원(특별교부금)하여 무한상상실이 설치된 경우가 0.68%로 미미하므로 창의융합교육 활성화 기반 구축이라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립학교만 지원한다는 것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학교내 무한상상실 구축 현황]

(단위: 교, %)

구분	공·사립				국립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전체 학교 수(A)	6,023	3,204	2,341	11,568	16	7	10	33
기구축 학교 수(B)	18	19	42	79	-	-	-	-
비율(B/A)	0.3	0.59	1.79	0.68	-	-	-	-

자료: 교육부

그리고 교육부가 2019년에 지원할 계획인 국립중학교는 지역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아 접근성에도 한계가 있다. 국립중학교는 경북(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경남(경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충남(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전남(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제주(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충북(충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한국교원대학교부설미호중학교)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사업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장과 교사의 의지, 주변학교 수요 등도 중요한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국립학교만을 전수 지원하는 것은 예산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창의융합교육 활성화 기반 구축이라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고로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용률이 저조한 소규모 무한상상실을 구조조정할 사례를 참고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4년부터 「무한상상실 개설·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21개소에 대해 22억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당초 거점기관 20개, 소규모 기관 36개의 운영을 지원하였으나 이용률(일평균 11명)이 낮아 2016년 거점기관 21개소만 남기고 구조조정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무한상상실 구축·운영]

사업명	무한상상실 구축·운영
주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개요	국민 모두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발현할 수 있는 창작문화 형성을 위해 상상을 가치로 창출하는 생활밀착형 창작공간
2016~2018년 예산	44.6억원, 22.2억원, 22.2억원
물량/단가	21개소/1.06억원
예산 활용	장비 유지 및 구입 등 운영비(0.92억원) 성과확산 및 홍보비(0.14억원)
사업 내용	- 무한상상실 장비·공간 등 인프라 구입 개선 - 공방형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만들기 활동 활성화
지역별 분포	서울 2, 부산 2, 대구 1, 인천 1, 광주 2, 대전 1, 울산 1, 경기 2, 강원 2, 충북 1, 충남 1, 전북 1, 경북 2, 경남 2

자료: 교육부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이유는 소규모 시설이 많을 경우 접근성은 좋으나 2~3천만의 운영비(거점기관 1억원 운영비 지원)를 지원함에 따라 시설 장비가 부족하여 이용률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참관형 보다 공방형의 이용률이 높음에도 불

구하고 공방형은 비용소요가 크기 때문에 소규모 시설의 경우 참관형 위주로 운영하면서 이용률이 저조하였다.

교육부의 무한상상실의 경우 첫해에 1억원의 설치 비용을 지원한 후 이후 2년간 연간 2천만원 운영비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구조조정된 과거 소규모 기관과 유사한 방식의 운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원계획에 따라 정규교육과정 내 운영이 가능하고, 학생의 접근성이 좋아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무한상상실의 설치 이후 예상 소요 비용(재료비 및 수리비, 운영비, 강사비, 정보넷 운영, 프로그램 개발비 등)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국가교육회의 운영지원 사업<sup>1)</sup>은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17.9.)에 따라 교육개혁 및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 교육인재 양성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및 조정 등을 위한 국가교육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19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5,400만원(1.7%) 증가한 30억 6,400만원이다.

[2019년도 국가교육회의 운영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가교육회의 운영지원	483	3,118	3,118	3,064	△54	△1.7

자료: 교육부

### 나. 분석의견

국가교육회의 운영지원 사업의 수행시 교육현안에 대한 논의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수행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2017년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운영을 위해 예비비 15억 8,900만원을 배정받았으나, 집행현황을 보면 2억 5,400만원(16.0%)을 이월하고 8억 5,200만원(53.6%)을 불용하여 집행률이 30.4%로 저조하였다. 국가교육회의의 출범이 늦어지고 국가교육회의 회의가 2017년 12월 27일 1차례 개최되면서, 3개월(10~12월)간 지출 소요가 반영된 인건비, 일반수용비 등을 대부분 불용하고 연구용역 발주(2017. 12. 22.~29.)가 늦어지면서 연구용역비가 전액 이월되었기 때문이다.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7031-300

[국가교육회의 운영지원 사업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2017					2018('18.8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본예산	추경			
국가교육회의 운영지원	0	1,589	483	254	852	3,118	3,118	3,239	1,456	3,064

자료: 교육부

2018년에는 국가교육회의가 대입제도 공론화위원회 업무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일반수용비 등을 중심으로 집행률(2018년 8월말 집행률 45.0%)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8월 동안 국가교육회의에서 수행한 회의개최 내역(164회) 중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회의가 81건이며, 자문위원회는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국가교육회의 회의 개최 실적(8월말 기준)]

(단위: 회)

회의명	2018년 계획	실적(2018. 1~8월)			
		전체회의	소위원회	기타회의	자문위원회
유초중등교육전문위원회	36	29	12	14	3
고등교육전문위원회	36	22	10	4	8
미래교육전문위원회	36	19	7	6	6
교육비전특별위원회	36	13	7	5	1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36	27	8	10	9
자문위원회	32	0	0	0	0
공론화위원회	-	81	28	38	15
합 계	212	164	72	77	42

주: 1. 2018년 계획 상의 회의 횟수의 근거가 되는 2018년 예산서에는 위원회 명이 없으며, 전문위원회, 자문위원회로만 기재되어 있으며, 2017년 12월 국가교육회의 구성 이후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명칭과 역할이 정하여졌음. 유초중등교육전문위원회, 고등교육전문위원회, 미래교육전문위원회, 교육비전특별위원회,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는 전문위원회로 기재,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회로 기재

2. 기타회의는 교육부 업무 추진 상황 협의, 이슈 논의 회의 등임

자료: 교육부

2) 공론화위원회 관련 토론회 및 행사진행을 위해 일반수용비(210-01)에서 일반용역비(210-14)로 조정을 통해 3.5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일반수용비에 편성된 홍보비 2억원을 공론화위원회 관련 홍보비로 집행하였으며, 동 금액은 2018년 1~8월 동안 국가교육회의 운영지원의 집행액 14.6억원의 37.7%에 해당한다.

2018년에는 국가교육회의 지원단 인력 다수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을 담당하고 3개 전문위원회 및 1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 역할을 담당하여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집중되어 정책세미나, 토론회 등 당초 고려했던 대내외적인 의견수렴이나 논의의 활성화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sup>3)</sup>

국가교육회의는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비해 교육혁신 및 중장기 교육정책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므로 특정현안에 집중하는 것 보다는 유치중등교육, 고등교육, 미래교육 등 다양한 교육 분야의 정책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국가교육회의는 예산안 편성 시 교육현안에 대한 논의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고 당초 계획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3) 이에 대해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이후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6개 권역 경청회를 개최하는 등 대내외 의견수렴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비 보육료 집행잔액 반납 지연에 따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수입 미반영

### 가. 현황

정부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만 3~5세)에 대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을 위해 3년 한시법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2016.12.20.)하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전입금으로 구성되며, 이는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지출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유치원) 및 지자체(어린이집)에 유아교육비 보육료를 보조(국고보조율 100%)방식으로 집행한다.

2019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전입금 3조 7,440억원, 세출은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3조 7,440억원이다.

[2019년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7 결산	2018예산		2019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
세입 일반회계전입금 (91-911)	3,940,881	3,892,717	3,892,717	3,744,037	△148,680	△3.8
세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3,940,881	3,892,717	3,892,717	3,744,037	△148,680	△3.8

자료: 교육부

누리과정 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여 오다가 2017~2019년 한시회계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2016.12.20.)에 따라 3년 한시 특별회계 설치·운영)를 설치하여 지원하고 있다. 동 회계의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인 교육세의 일부와 국고이며, 국고 비중은 2017년에 21.8%, 2018년 52.9%<sup>1)</sup>, 2019년 52.9%이다.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788-4634)

1) 2017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의 41.2%를 국고로 지원하였으며 2018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세입의 자원분담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7		2018		2019	
		비중		비중		비중
교육세	30,809	78.2	18,341	47.1	17,628	47.1
국고	8,600	21.8	20,586	52.9	19,812	52.9
합 계	39,409	100.0	38,927	100.0	37,440	100.0

자료: 교육부

나. 분석의견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집행잔액 반납이 지연되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수입에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을 미반영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집행 지침」은 해당 회계연도 내 집행잔액 등 불용 발생시,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특별회계로 반납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사업비 집행잔액은 특별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2017년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2019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기타경상이전수입 항목을 추가하지 않고 있으며 집행 잔액을 세입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사업의 2017년 집행잔액은 891억원이며, 유치원에서 202억원, 어린이집에서 689억원이 발생하였다.

[2017년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 집행 잔액]

(단위: 백만원)

교육부 교부액	시·도교육청 예산편성액			집행잔액			
	유치원	어린이집	기타	유치원	어린이집	기타	전체
3,940,881	1,853,386	2,087,273	222	20,182	68,684	222	89,088

주: 전체 집행잔액에 잡수입 포함

자료: 교육부

소요액 전액을 국고로 부담한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추경 연기로 2017년 유아교육비 보육료의 집행잔액을 반납한 시·도교육청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반납 규모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수입항목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2018년도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집행 지침」에 반납 절차 진행시, 교육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교육부 기타 세입계정으로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집행잔액 반납이 2018년 9월 현재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재원을 적시에 적절한 용도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정부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므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2017년 집행잔액을 조속히 반납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대학창의적자산실용화(BRIDGE+) 지원 사업은 대학 내 창의적 자산 활용에 중점을 두고 실용화 연구, 시제품 제작, 우수기술 해외 특허출원 등을 지원 하는 것으로,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sup>1)</sup>의 내역사업이다. 이 사업의 2019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40억원 증가한 165억원이다.

[2019년도 대학창의적자산실용화(BRIDGE+)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대학창의적자산실용화 (BRIDGE+)지원	14,731	12,522	12,522	16,536	4,014	32.1

자료: 교육부

2019년 예산안은 지원단가 인상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2018년 18교에 대해 학교당 7억원 지원하던 것을 2019년에는 18교에 대해 학교당 9억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대학은 대학창의적자산실용화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산학협력단 또는 기술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사업 인력 구성은 사업책임자, 실무책임자, 기술이전사업화 전문인력이며, 대학 산학협력단장이 사업책임자를 맡아야 하며, 실무 책임자는 기술이전사업화 전문인력의 대표로서 대학 내외부에 대한 조정 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가 되며, 기술이전사업화 전문인력은 지식재산 활용 및 기술사업화 역량을 갖추고 있는 전담인력으로 창의적 자산의 기획·고도화 및 실용화 추진 실무를 담당한다.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2256-300

## 나. 분석의견

계속지원 대학의 경우 기술이전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사업재원을 신규대학이나 협력대학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 사업은 2015~2017년간 1기 사업이 추진 완료되었으며 2기 사업이 2018~2022년간 추진 중이다.<sup>2)</sup> 2018년 예산규모는 2017년 대비 약 15% 감축된 125억원이다. 교육부는 2기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원대학 수를 감축하고 대학 간 협력 프로젝트 수행과 같은 협력대학과의 공동사업 내용을 추가하는 형태로 사업을 개편하였으며, BRIDGE+ 사업의 예산을 증액한 것은 2기 사업에서 추가된 사업내용을 수행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예산안 편성내역을 보면, 2018년 2기 사업 수행대학 선발 과정에서 동 사업의 지원단가 인하와 함께 지원대학수는 20개에서 18개로 감축이 이루어졌으며, 2019년 지원단가를 2017년 보다 24.7% 인상된 수준으로 편성하였다.

[2017~2019년 대학창의적자산실용화(BRIDGE+)지원 사업 예산 편성 내역]

	2017	2018	2019
대학지원	14,420백만원 = 20개 사업단×721백만원	12,235백만원 = 18개 대학×680백만원	16,199백만원 = 18개 대학×899백만원
사업관리비	311백만원	287백만원	337백만원
합 계	14,731백만원	12,522백만원	16,536백만원

자료: 교육부

2기 사업 대학 선정 결과 1기 사업에서 지원받았던 대학 중 성과가 미흡한 일부 대학을 제외한 대다수인 14개 대학이 2기 사업에서도 선정되어 교육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2) 대학 책무성 제고를 위해 2년 지원 후 단계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수행 대학에 대한 계속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2019년도 대학창의적자산실용화(BRIDGE+)지원 사업 지원대학 현황]

연번	1기 사업 수행(2015~2017)	2기 사업 수행(2018~2022)
1	강원대학교	강원대
2	건국대학교	고려대
3	경북대학교	경상대
4	경상대학교	경희대
5	경희대학교	부산대
6	고려대학교	서강대
7	부산대학교	성균관대
8	서강대학교	세종대
9	서울대학교	숙명여대
10	서울대학교 생명공학공동연구원	송실대
11	성균관대학교	아주대
12	아주대학교	연세대
13	연세대학교	전남대
14	전남대학교	전북대
15	전북대학교 헬스케어기술개발사업단	중앙대
16	중앙대학교	충남대
17	충남대학교	포항공대
18	충북대학교	한양대
19	포항공과대학교	
20	한양대학교	

자료: 교육부

동 사업의 1기 지원대상자 대부분이 2기에도 지원받고 있으며 동 사업으로 기술이전 수입료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료 활용과 관련하여 기술이전 기여자(사업 인력) 보상이나 사업 수행비용으로 투입하는 등 채투자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 관리운영 규정」 제32조<sup>3)</sup>에 따르면 사업단의 수익금은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으로 귀속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처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개정하여 사업성과가 사업에 채투자되도록 사업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3)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 관리운영 규정」

제32조(예금이자 및 수익금의 처리) (생략)

② 사업단의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무형의 과실(산업재산권, 수익금, 특허료, 기술이전료 등을 포함한다)은 관계 법령 및 관련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해당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BRIDGE 대학 기술이전 수입료]

(단위: 천원)

대학	2015	2016	2017
강원대	527,800	755,141	795,001
건국대	1,357,668	1,467,260	888,332
경북대	709,000	840,000	1,124,036
경상대	145,000	1,312,599	1,017,582
경희대	130,698	228,500	348,500
고려대	155,000	2,836,551	1,609,264
부산대	319,500	1,194,082	2,371,352
서강대	1,049,558	1,200,193	1,223,148
서울대	478,913	804,070	1,082,639
서울대(생공연)	525,625	514,000	651,927
성균관대	2,022,194	1,327,027	1,406,923
아주대	626,470	1,371,015	2,385,828
연세대	658,000	922,320	1,509,629
전남대	809,805	2,889,026	3,575,438
전북대(헬스케어)	157,053	220,000	779,090
중앙대	1,965,721	1,540,997	3,679,178
충남대	303,682	515,500	1,136,336
충북대	1,005,088	1,895,409	2,386,221
포항공대	123,000	521,575	619,708
한양대	2,476,006	3,204,759	2,934,094

자료: 교육부

또한 교육부는 대학의 사업성과 재투자 노력을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2019년 BRIDGE+ 사업 예산 증액분 사용내역이 협력대학에 대한 지원범위와 규모<sup>4)</sup> 확대에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사업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4)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사업 기본계획」 내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에서 사업 수행대학은 국고지원금의 15% 이상을 협력대학과의 공동 프로젝트 수행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 가. 현황

2019년도 신규 사업인 한국고전총간 편찬사업은 중국의 ‘고서공정’에 대항하고 한국문화의 고유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인의 모든 한문저술을 집대성하는 민족사적 편찬사업으로서 한국고전번역원 출연(R&D)<sup>1)</sup>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고전번역원(이하 “번역원”이라 한다)<sup>2)</sup>이 교육부로부터 연구개발출연금(연구활동비등 360-05)을 받아 추진할 예정이며, 2019년도는 예산안에는 6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2019년도 한국고전총간 편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한국고전번역원 출연(R&D)	17,059	19,813	19,813	19,114	△699	△3.5
한국고전총간 편찬	-	-	-	600	600	순증

자료: 교육부

번역원은 중국 「유장(儒藏)」 등 고서공정에 대응하는 한국고전 집대성사업 절실한 상황에서 한국고전문헌의 국가적 계획·관리를 위한 기초조사와 고전총서사업이 부재하고 소장기관별로 파편화된 사업으로 한국고전의 보존·활용에 한계가 있는 등 한국인 저술 고전문헌의 체계적·종합적·국가적 정리가 미비하므로 한국고전총간 편찬 사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윤희호 예산분석관(yoonhh@assembly.go.kr, 788-4683)

1) 코드: 일반회계 2433-303

2) 한국고전번역원은 교육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고전문헌을 수집·정리 번역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고 있으며 고전문헌을 번역·보급하여 전통문화 유산의 현대적 가치 창출과 한국학 연구·교육에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역대 주요 인물의 문집, 승정원일기, 일성록, 조선왕조실록 등 주요 고전문헌을 교감·표점·번역하는 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 나. 분석의견

한국고전번역원은 한국고전총간 편찬 사업의 전체 사업 규모를 확정하는 등 본 사업 착수에 앞서 사업추진 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국고전총간 편찬 사업의 2019년도 예산안 세부내역을 보면 원전촬영·보정비 14,200만원, 교감·표점비 18,400만원, 영인서 편집교정비 1,000만원 등 총 6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sup>3)</sup>

[2019년도 한국고전총간 편찬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원전 촬영·보정비	142	· 촬영·보정비: 280책×50만원=1억 4,000만원 · 장비 이동비: 2개소×100만원=200만원
목차·해제작성비	20	· 목차: 8종×50매×2만원=800만원 · 해제: 8종×50매×3만원=1,200만원
교감·표점비	184	· 4책×4,600만원=1억 8,400만원
영인서 편집교정비	10	· 2책×500만원=1,000만원
교점서 편집교정비	26	· 4책×650만원=2,600만원
영인서 인쇄비	10	· 2책×500만원=1,000만원
교점서 인쇄비	20	· 4책×500만원=2,000만원
DB구축비	108	· 2책×5,400만원=1억 800만원
참고자료 구입비	80	· 1,600책×5만원=8,000만원
계	600	

자료: 교육부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9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시범사업 예산이며, 번역원에 따르면 현재 신규 사업에 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중으로, 2018년 말 종합 계획 수립 후 전체 사업 규모와 예산 및 사업기간이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교육부 및 번역원의 사업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개년

3) 영인(影印)이란, 원본을 사진으로 복사하여 보존하는 작업을 의미하고, 교점(校點)이란, 한문으로 된 옛 문헌에 현대적인 문장부호를 가하고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동안 1단계 사업으로서 양장본 영인서 500책, 교점서 1,000책을 편찬·간행할 계획으로, 2019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영인서 2책, 교점서 4책을 간행할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한국고전총간 편찬 사업 1단계 10개년 사업 추진 계획]

구 분	준비년 ('18)	1차년 ('19)	2차년 ('20)	3차년 ('21)	4차년 ('22)	5차년 ('23)	6차년 ('24)	7차년 ('25)	8차년 ('26)	9차년 ('27)	10차년 ('28)	마감년 ('29)
종합계획 수립	■											
주요 소장기관 협의체 구성	■											
1차 시범사업 및 피드백		■										
2차 시범사업 실시			■									
전국 소장기관 협의체 구성			■									
정리·편찬사업 실시		■										
정보화(DB)사업 실시		■										
해외문헌 수집 및 편찬					■	■	■	■				
백서 편찬 및 간행												■

자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총간 편찬 사업 1단계 10개년 연차별 간행 계획]

(단위: 책)

구분 (연도)	1차 ('19)	2차 ('20)	3차 ('21)	4차 ('22)	5차 ('23)	6차 ('24)	7차 ('25)	8차 ('26)	9차 ('27)	10차 ('28)	계
양장본 영인서	2	10	60	60	60	60	60	60	60	68	500
양장본 교점서	4	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36	1,000

자료: 한국고전번역원

영인서 및 교점서 간행을 위한 책당 단가를 번역원 제출 자료에 따라 계산하면 영인서 간행을 위한 단가는 책 당 8,600만원, 교점서는 5,750만원이며, 간행 단가가 규모와 무관히 일정하다면 번역원의 1단계 계획 1,500책(영인서 500책, 교점서 1,000책) 간행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총 1,005억원에 달한다.4)5)

[한국고전총간 편찬 사업 1단계 10개년 연차별 간행 계획 총사업비(추정)]

(단위: 백만원, 책)

구분	책당 단가(A)	책수(B)	예산(A×B)
영인서	86.0	500	43,000
교점서	57.5	1,000	57,500
합계		1,500	100,500

주: 책당 단가(A)가 간행물 수에 무관히 일정하다고 가정

자료: 한국고전번역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한국고전총간 편찬 사업이 시범사업이라 하더라도 총 사업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이전에 관련 예산부터 반영되어 있으며, 실제 추진 가능성을 고려하여 총 사업규모 등도 현실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번역원은 1단계 한국고전총간 편찬사업 추진에 앞서 전체 사업 규모를 확정하는 등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4) [한국고전총간 편찬 사업의 영인서 책당 단가]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비고
원전 촬영·보정비	12	50만원×4종×한적 6책	양장본 1책 4종 수록 . 1종당 한적 6책
목차작성비	4	2만원×4종×50매	양장본 1책 4종 수록
해제작성비	6	3만원×4종×50매	양장본 1책 4종 수록
편집교정비	5	-	-
인쇄비	5	인쇄대+용지대+표지·제본대	-
DB구축비	54	-	-
계	86		-

자료: 한국고전번역원

5) [한국고전총간 편찬 사업의 교점서 책당 단가]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비고
교감·표점비	46	25,500원×1,800매(1책)	-
편집교정비	6.5	15,700원×400매(1책)	-
인쇄비	5	인쇄대+용지대+표지·제본대	-
계	57.5	-	-

자료: 한국고전번역원

## 집 필

**총괄** | 이승재 예산분석실장

**심의** | 서세욱 사업평가심의관  
정승환 예산분석총괄과장  
박혜진 산업예산분석과장  
이동훈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전용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신은호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박홍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김성은 예산분석관  
윤희호 예산분석관

**지원** | 이가현 행정실무원

### 예산안분석시리즈 II 2019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발간일 2018년 10월  
발행인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  
편집집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경일칼라콤

---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http://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ISBN 978-89-6073-126-4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8